

농식품 FTA 활용 가이드북

Agrifood Free Trade Agreement Application Guidebook





농식품 FTA 활용 가이드북

본 가이드북은 농식품 분야의 FTA특혜관세 활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원산지관리 기본정보를 제공하는 「I. 기본편」과, 실제 FTA 적용 활용현장에서 나타난 주요 이슈와 문제점 등을 다룬 「II. 활용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가이드북을 통해 FTA활용에 필요한 기본 정보와 실무지식을 습득하여 정확하고 적절하게 FTA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CONTENTS

I . 기본편 05

1. FTA 수출활용 프로세스	06
2. FTA 협정 발효국 확인	08
3. 수출물품 HS Code 확인	11
4. FTA 관세 혜택 확인	20
5.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25
6. 원산지 결정기준별 원재료 관리 전략	43
7.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46
8.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	52
9. 운송원칙 확인	56
10. FTA 서류 보관	60
11. 원산지 검증	62

II . 활용편 65

1.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사업	66
2. 품목분류 오류 (쌀과자)	68
3. FTA 협정별로 다른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김치)	73
4. 완전생산기준 적용시 소매용 포장 고려 여부 (참기름)	78
5. 최소기준 적용 가능 여부 (소스)	82
6.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BOM 작성 방법 (간장)	89
7.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BOM 작성 방법 (음료)	94
8. 원산지 증명서 작성 (곡물 조제품)	99
9. 완전생산기준 입증서류 (배)	103
10. 완전생산기준 입증서류 (홍삼)	110
11. 완전생산기준 입증서류 및 운송원칙 (버섯)	116

III . 원산지관리시스템(FTA Agri)의 활용 121

1. FTA Agri 개요	122
2. FTA Agri 주요기능	124

I. 기본편

기본편에서는 수출물품의 FTA 활용절차를 업무 순서에 따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수출물품의 HS CODE 확인' 단계에서부터 '원산지 검증 대응' 단계까지 업무에 필요한 기본개념 설명과 각종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 실무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FTA 수출활용 프로세스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중국 바이어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제조하였다고
하여 FTA 원산지 증명서를
보내주겠다고 하면 안 돼요.
FTA 활용 절차에
따라 준비해야 해요.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FTA 수출 활용 프로세스(P. 7)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



다음 페이지부터 동 프로세스에 따라 FTA 내용을 설명함.

1) 발효: FTA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

2 FTA 협정 발효국 확인

우리 회사가 수출하는
국가 중 FTA를 체결한 국가가
어디인지 궁금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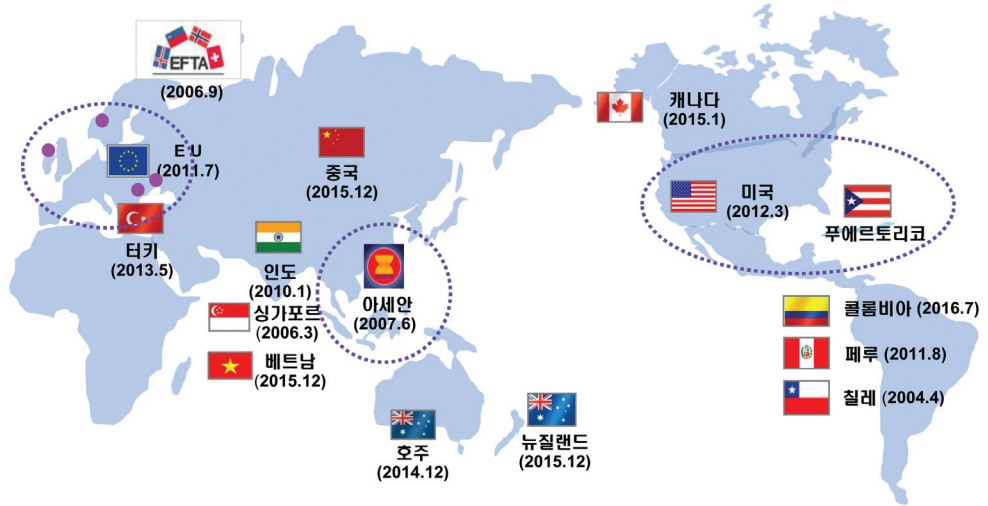


한국은 미국, EU,
중국 등 52개 국가와 FTA를
체결했어요. 전 세계 중
FTA를 3번째로 많이
체결한 국가라고 해요.



한국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7년 12월 기준 15개 FTA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대상 국가는 52개 국가임.

FTA 협정 발효국



이 중 여러 국가와 맺은 FTA는 다음과 같음.

FTA	대상국가
한-EFTA 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공국
한-아세안 FTA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한-EU FTA	EU 28개국(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크로아티아) ※ 세우타, 멜리아, 산마리노, 안도라, 모나코는 EU는 아니지만, FTA 관세 혜택은 EU와 동일하게 적용함

▶ Q&A. FTA 발효국 확인

질문 홍콩 · 대만은 아세안 국가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홍콩 · 대만은 아시아에 해당되지만, 아세안 국가는 아닙니다. 아세안 국가는 위 표에서 보듯 말레이시아 등 10개국입니다.

질문 한국과 베트남과 체결한 FTA가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인데, 어떤 FTA를 활용하여야 하나요?

답변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중 관세 혜택 및 원산지 결정기준이 유리한 FTA를 선택하여 활용하면 되요.

질문 홍콩 또는 마카오로 수출하는데, 한-중 FTA를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홍콩은 1997년 · 마카오는 1999년 중국에 반환되었으나, 한-중 FTA에서 중국의 영역을 '중국의 관세영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국과 관세율 체계가 다른 홍콩 또는 마카오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중 FTA 활용 대상이 아닙니다.

3 수출물품 HS Code 확인



1. HS 협약

HS 협약이란 관세·통계·운송 등 모든 무역 분야에 공용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만든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을 말함.

<예>

태국 수출자가 태국어로 INVOICE에 품명 등을 작성하면 포워딩·수입국 세관·수입국 관세사 등이 그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함 → HS를 활용하여 관세·통계·운송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함.

2. HS Code의 이해

가. HS Code

HS 협약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HS Code·품목분류·세번부호라고 표현하며 다 같은 의미임.

나. HS Code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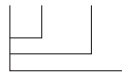
- ① 류(Chapter) : HS Code 맨 앞 2자리
- ② 호(Heading) : HS Code 맨 앞 4자리
- ③ 소호(Sub-Heading) : HS Code 맨 앞 6자리

<예> 간장

HS CODE의 이해



예) 2103.10.0000



- 류 (Chapter) :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 호 (Heading) : 제2103호,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
- 소호 (Sub-Heading) : 제2103.10소호, 간장

※ HS Code는 6단위까지만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며, 그 이하는 각 국의 사정에 따라 달리 사용함.

다. 동·식물성 생산품의 HS 체계

제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류	품명
1	산 동물
2	육과 식용설육
3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4	낙농품·조란(鳥卵)·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5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제2부. 식물성 생산품

류	품 명
6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7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8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9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10	곡물
11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12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짐과 사료용 식물
13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제3부. 동식물성유지 및 이들 분해생산품,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류	품 명
15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류	품 명
16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7	당류와 설탕과자
18	코코아와 그 조제품
19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20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21	각종의 조제식료품
22	음료·알코올 및 식초
23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24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3. HS Code와 FTA

HS Code에 따라 FTA 미적용 관세율, FTA 적용 관세율, 원산지 결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HS Code의 적정성 확보가 필수적임.

4. HS Code 오류 사례

가. 사례 1

① 물품설명

품명	마가린
물품설명	식물성 경화유 55%, 버터오일 25%, 수분 17%에 식품첨가물 3%를 혼합·유화시켜 제조한 마가린
물품사진	

② HS 관세율표

HSK				품명
1517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10	00	00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HSK				품명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
	90	90	99	기타

③ 결정세번

품명만 볼 때 마가린의 HS Code 6단위는 1517.10이나, 세관에서 HS 규정을 검토하여 2106.90에 분류하였음.

즉, HS Code는 품명만으로 확인하여서는 곤란하며, HS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④ 중국 관세율 비교


구분	중국 HS	FTA 미적용(2017)	FTA 적용(2017)
정	21069090	20%	19%
오	15171000	30%	30%(미양허)

CF) 미양허 : FTA 혜택을 주지 않는 품목이라는 의미

위 표에서 보듯 HS Code가 어디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FTA 미적용 관세율 및 FTA 적용 관세율이 달라짐.

나. 사례 2

① 물품설명

물품	설명	학명	사진
동부콩	쌍떡잎식물장미목 콩과의 한해살이 덩굴식물의 종자	Vigna sinensis	

② HS 규정 및 한국 관세율

한국 HS	품명	관세율
0713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713.3	콩(비그나종 · 파세러스종)	
0713.39.0000	기타	기본 27%(미양허)
0713.90.0000	기타	한-아세안 0%

③ 결정세번 및 조치 결과

- 수입신고 : HS 0713.90.0000, 한-아세안 FTA 관세율 0% 적용.
- 세관 : 동부콩은 Vigna종에 해당되므로 HS 0713.39.0000임.
→ 관세율 차액 27%만큼 약 8억원 추정²⁾.

2) 추정 : 부족 세금액을 징수하는 처분

5. HS 확인을 위한 준비작업

HS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 및 원재료에 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함.

구분	확인 내용	준비자료
조제식료품	원재료의 구성성분 및 함량, 제조공정, 구체적인 용도 등	품목제조보고서, BOM ³⁾ , 제조공정도, 샘플 등
원재료	▶ 1차 산품(채소·과일 등) : 신선, 냉장, 냉동, 건조 등 가공 상태	샘플 등
	▶ 첨가제(L-글루타민산나트륨 등) : 화학식, 화학구조 등	MSDS ⁴⁾ 등

6. HS Code 확인방법

가. HS Code 전문가인 관세사 자문

수출입물품 세관 신고시 HS Code는 필수 기재사항이며, 수출입신고를 대행하는 전문가가 관세사이므로 관세사의 자문을 통해 HS Code를 확인하는 방법.

나. 법규집을 통한 확인

HS 법규인 관세율표·관세율표 해설서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다. 인터넷을 통한 확인

구분	홈페이지 주소
한국 관세청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미국 CBP ⁵⁾	https://rulings.cbp.gov/
EU BTI ⁶⁾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consultation.jsp?Lang=en

3) BOM(bill of material,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계산서) : 원재료명,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음.

4)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Sheet 를 말함. 제조자명, 제품명, 성분과 성질 등이 기재되어 있음.

5) 미국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 출입국 관리, 세관업무 등을 수행하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부 기관.

6) EU BTI(European Binding Tariff Information) : 사전에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EU 세관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

■ 한국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활용 방법

①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www.customs.go.kr) → ‘품목분류’ 클릭

② ‘관세법령정보포털 3.0’ 접속 → ‘세계 HS’ 클릭

③ HS 규정 및 분류사례 등을 검색하여 HS Code 확인

관세법령정보포털 3.0 (CLIP 3.0 (Customs Law Information Portal 3.0))

통합검색

법령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세계HS < 품목분류사례-대한민국(가로)(UI-ULS-0203-002S) Home > 세계HS > 품목분류 국내사례 > 품목분류사례

HS정보 HS 가이드 품목분류 국내사례 품목분류 사례

참조번호: 2016-10-28
시행일자: 2016-10-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팀
결정사번: 8427.10-1010

품명: Self-propelled trucks powered by an electric motor, of counter balance type, AGV(Automated Guided Vehicle) System; AGV system for NEXEN TYPE JAPAN

품용설명: - 작동용리
- 벙글리 모터를 구동하여 동작하며, AGV 매스지에 중계기를 통해 무선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벽에 설치된 자기항(센서)을 따라 운행
[용용사진]

전체 4,948 건 페이지당 10

시행일자	시행기관	참조번호	결정사번	수량	품명
2016-10-28	관세평가분...	품목분류2과...	8427.10-1010	1	Self-propelled trucks powered by an electric motor, of counter balance type,...
2016-10-28	관세평가분...	품목분류3과...	8708.29-0000	1	BRKT ASM-F/FDR FRT LWR LH, 95024098

라. 한국 관세청 질의를 통한 확인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통해 HS Code를 확인하는 방법.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절차

1) 신청권자

수출자, 수입자, 제조자, 관세사 · 관세법인 · 통관취급법인

2) 신청 방법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3) 인터넷 접수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업무처리 → 기타 전자민원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 <http://portal.customs.go.kr>

4) 견본 및 증빙서류 접수처

우) 305-510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 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4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TEL. 042-714-7535, 7583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법령정보포털 3.0' 접속 → '세계 HS' 클릭 → 'HS 가이드' 클릭 → '품목분류확인방법' 클릭하여 내용 확인

▶ Q&A. 수출물품 HS Code 확인

질문 수입자에게 확인한 결과 한국의 HS Code 앞 6단위와 수입국의 HS Code 앞 6단위가 다른 경우가 있던데, 왜 그런가요?

답변 HS Code 규정은 동일하나, 일부 물품의 경우 수출국과 수입국의 해석에 따라 HS Code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 조미김

[한국] HS 2106.90(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영국] HS 2008.99(식용에 적합한 식물조제품)

질문 수출국의 HS Code와 수입국의 HS Code가 다른 경우 FTA 원산지 증명서 상에 어느 국가의 HS Code를 기입하여야 하나요?

답변 수입국에서 FTA 관세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국 관세당국의 HS Code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수출자가 HS Code를 확인한 후 꼭 수입자에게 HS Code를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기관발급 FTA(한-아세안, 한-인도, 한-중, 한-베트남 FTA)의 경우 수입국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국의 유권해석을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수입국의 HS Code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4 FTA 관세 혜택 확인

FTA가 발효되면
모든 물품에 대하여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아니요. FTA가
발효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FTA 관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쌀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FTA가 발효되어도 FTA 관세
혜택이 없어요.



1. FTA 관세율 개요

FTA 관세율이란 FTA 협정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율보다 낮은 FTA 협정에서 정한 관세율을 말함.

HS Code별로 FTA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FTA 협정 발효 즉시 0%가 되는

물품, 일정기간 동안 점차적으로 인하되는 물품,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FTA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으로 나누어짐.

2. FTA 관세율 확인 방법

FTA 관세율은 FTA 협정문 상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협정문 내용을 파악하여 FTA 관세율을 확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가. 국내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구 분	홈페이지 주소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트레이드내비	http://www.tradenavi.or.kr
관세청 FTA 포탈	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ftaportalkor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http://cert.korcham.net

■ 트레이드내비 홈페이지를 활용한 FTA 관세 혜택 확인

① 트레이드내비 홈페이지 접속

② 'FTA/관세' 클릭 → '품목별 정보검색'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TradeNAVI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and navigation links. The 'FTA/관세' menu item is highlighted with a red dashed box. Below it, the '품목별 정보검색' (Product Information Search) section is visible. The search criteria are set to '대상국: 중국' (Target Country: China) and 'HS코드' (HS Code). A red dashed box highlights the '대상국' dropdown menu. The search results area shows a message: '위 검색조건을 실행해 주세요' (Please execute the search conditions).

③ '대상국' 선택 → 'HS 코드'란에 HS Code 6단위 입력 → '결과보기' 클릭 → '상대국 해당 HS Code'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search results for 'Soya sauce'. The search criteria are '대상국: 중국' (Target Country: China) and 'HS코드: 210310'. The '결과보기' (View Results)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dashed box. The search results are displayed in a table with the following columns: '상대국 HS Code' (Target Country HS Code) and 'Description'. The first result is '2103100000 Soya sauce', which is highlighted with a red dashed box. Other results include '2103200000 Tomato ketchup and other tomato sauces', '2103300000 Mustard flour and meal and prepared mustard', '2103901000 Gourmet powder', '2103902000 Aromatic bitters, 44. 2%~49. 2% of which is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1. 5% ~ 6% of which is sp', and '2103909000 Other'.

상대국 HS Code	Description
2103	Sauces and preparations therefor; mixed condiments and mixes seasonings; mustard flour and meal and p
2103100000	Soya sauce
2103200000	Tomato ketchup and other tomato sauces
2103300000	Mustard flour and meal and prepared mustard
	Other:
2103901000	Gourmet powder
2103902000	Aromatic bitters, 44. 2%~49. 2% of which is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1. 5% ~ 6% of which is sp
2103909000	Other

④ 수입국의 관세율(기본관세율⁷⁾, 잠정세율⁸⁾, FTA 세율 등) 정보 확인

관세
내국세 (1)
TBT통보문 (8)
환경규제 (0)
인증 (0)
수입요건 (15)
통관거부사례 (6.690)

※ 중국은 기본관세율, ITA관세율, 잠정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기타 세율적용 우선순위 등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기본관세율 (MFN rate) TIP

- 기본세율 28%
- 관련설명 해당품목은 잠정세율 적용대상 품목입니다. 따라서 기본관세율(MFN Rate)이 아닌 하기의 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보조단위 kilogram

· 잠정세율 (Interim Rate) TIP

- 잠정세율 15%
- 부과기간 2017.01.01~2017.12.31

· FTA 협정세율 (FTA Preferential rate) TIP

- FTA 협정 세율 23.8% 타협정세율 (중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협정세율 조회)
- 발효일자 2015.12.20

※ 해당국가는 매년 최신의 협정세율을 제공하는 국가입니다. 표형태로 제공되는 FTA 세율정보는 협정체결 당시의 HS 정보이므로 원산지증명서상의 HS Code 및 과거세율 확인 등의 참고목적으로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S Code (2012기준)	품목명	연도별세율	양허유형?
21031000	Soya sauce	연도별세율	20

나. 해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국가	홈페이지 주소
EU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
뉴질랜드	https://www.customs.govt.nz/business/tariffs/working-tariff-document/
라오스	http://www.laotradeportal.gov.la/index.php?r=tradeInfo/index
말레이시아	http://tariff.customs.gov.my/
미국	https://www.usitc.gov/tata/hts/archive/index.htm
베트남	https://www.customs.gov.vn/default.aspx
스위스	http://xtares.admin.ch/tares/login/loginFormFiller.do;jsessionid=Zn9rhyqG6q1yTQtYFKKGkZkDTfpPnSJWktk0j6b7HhLG8m1tZ7!750585009

7) 기본관세율 :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세율을 말하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품목별 세율이 기재되어 있음.

8) 잠정세율 : 관세율표에 기본세율과 함께 표기되어 있는 세율로서 특정 품목에 대하여 기본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세율.

국가	홈페이지 주소
아이슬란드	https://vefskil.tollur.is/tollalinan/tav/
인도	http://www.cbec.gov.in/htdocs-cbec/customs
인도네시아	http://www.beacukai.go.id/btki.html
중국	http://fta.mofcom.gov.cn/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67735/
칠레	http://www.aduana.cl/arancel-aduanero-vigente/aduana/2016-12-30/090118.html
캄보디아	http://www.customs.gov.kh/publication-and-resources/customs-tariff-of-cambodia-2017/
캐나다	http://www.cbsa-asfc.gc.ca/trade-commerce/tariff-tarif/2017/menu-eng.html
태국	http://igtft.customs.go.th/igtft/en/main_frame.jsp
필리핀	http://tariffcommission.gov.ph/finder/index.php?page=tariff-finder3
호주	http://www.border.gov.au/Busi/cargo-support-trade-and-goods/importing-goods/tariff-classification-of-goods/current-tariff-classification/schedule-3

▶ Q&A. FTA 관세 혜택 확인

질문 관세율의 종류가 다양하던데, FTA 관세율이 가장 우선 적용 되나요?

답변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FTA 세율이 우선 적용되나, 덤핑방지관세⁹⁾ · 보복관세¹⁰⁾ · 긴급관세¹¹⁾ · 특정국물품긴급관세¹²⁾ · 특별긴급관세¹³⁾ · 상계관세¹⁴⁾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FTA 관세율보다 그러한 관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수출의 경우 FTA 수입국에서도 그러한 관세율이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수입자에게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 덤핑방지관세 : 외국의 덤핑판매에 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과하는 관세

10) 보복관세 :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부과하는 관세

11) 긴급관세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하는 관세

12) 특정국물품긴급관세 : 특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내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

13) 특별긴급관세 :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

14) 상계관세 : 외국에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

5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1. 원산지 결정기준 개요

가. 의의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FTA 협정 대상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함.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협상에 의해 결정되므로 통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FTA 마다 달리 정해지게 됨.

나.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분

① 일반 기준

FTA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¹⁵⁾ 규정을 말함. 기본원칙과 분야별 특례로 구분됨.

② 품목별 기준

수출물품의 HS Code별로 정해진 원산지 결정기준을 말함.

구분	종류			
일반 기준	기본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전생산기준 충분가공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내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분야별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적기준 세트물품 포장·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기준 간접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재 부속품·예비부품·공구 대체가능물품
품목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번변경기준 결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공공정기준 	

2. 기본원칙

가.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WO:Wholly Obtained)이란 당해 물품의 전부를 완전히 생산·가공·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함.

재배·수확한 농산물, 수렵·어로 작업에 의해 획득한 수산물 등이 주요 대상임.

1) 식물 및 식물성 생산품

모든 FTA에서 '재배' 및 '수확'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재배 이전 단계인 종자 생산과정 등은 FTA 영역 밖에서 수행되어도 무방함.

2) 산 동물 및 이들로로부터 획득한 물품

가) 산동물

모든 FTA에서 '출생' 및 '사육'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15) 총칙 : 전체를 포괄하는 규칙이나 법칙

출생 이전인 수정·임신과정 등은 FTA 영역 밖에서 수행되어도 무방함.

나) 산동물로부터 획득한 물품

대부분의 FTA가 '출생'·'사육'·'획득'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FTA는
다름.

출생 + 사육 + 획득	사육 + 획득	획득	규정 없음
EFTA, 아세안, 인도, 터키, 페루,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EU	미국	칠레, 싱가포르

<예>

- ① 캐나다산 소를 미국에서 도축하여 소고기를 생산한 경우
: 미국에서 '획득'된 소고기이므로 한-미 FTA 완전생산기준 충족.
- ② 스위스산 소를 EU에서 도축한 경우
: EU 내에서 '사육'되지 않은 소를 도축한 소고기이므로 한-EU FTA 완전생산
기준 불충족.

나. 역내¹⁶⁾가공원칙

1) 의의

당해 물품 생산 공정이 FTA 영역 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하고, 일부라도 FTA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본원칙임.(영역 원칙, 역외¹⁷⁾생산 금지 원칙)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정하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역내가공원칙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음.

2) 역내가공원칙 사례

▶ 들기름에 대한 한-미 FTA 품목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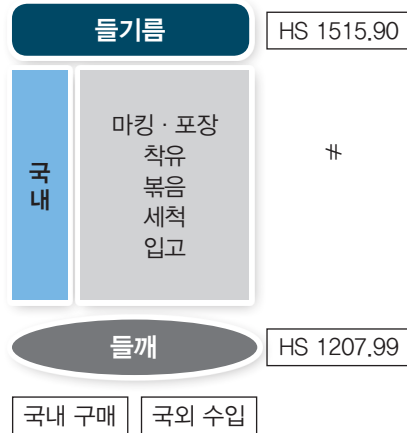
: 완제품의 HS 앞 2단위 ≠ 비원산지 원재료의 HS 앞 2단위

16) 역내 : 'FTA 영역 내' 라는 의미. 예) 한-미 FTA에서 '역내'라 하면 '한국과 미국 영역 내'라는 뜻.

17) 역외 : 'FTA 영역 밖' 라는 의미. 예) 한-미 FTA에서 '역외'라 하면 '한국과 미국 이외의 국가 영역'이라는 뜻.

▶ 제조 국가 및 제조 공정

• 사례1



• 사례2



▶ 사례 1.

한국에서 모든 생산 공정이 이루어졌으며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앞 2단위가 다르므로,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함.

▶ 사례 2

중국에서 수입된, 착유한 상태의 물품을 비원산지 재료로 보고 한국에서 마킹·포장 공정만 하였기 때문에, 착유한 상태와 마킹·포장한 상태의 HS 앞 2 단위가 동일하므로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다. 충분가공원칙

1) 의의

FTA 영역 내에서 당해 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원산지 제도의 기본원칙임.

단순·경미한 공정(최소공정, 불인정공정, 불충분공정 또는 단순 가공)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정하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음.

2) 불인정 공정의 범위

가) 단순 공정의 개념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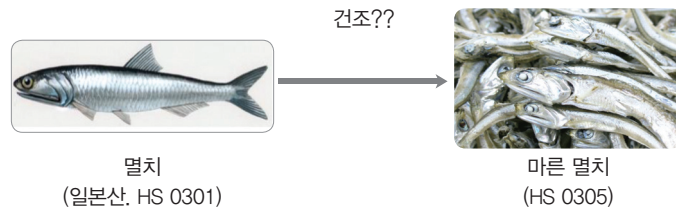
나) FTA 협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인정공정

운송·저장을 목적으로 상품을 보전하기 위한 작업·공정, 단순 조립, 분류·등급화, 선별, 표백, 단순 포장, 단순 혼합, 단순 절단, 단순 건조, 세트 구성 등

※ 음료 또는 의약품 등의 경우 혼합 또는 희석이 실질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공정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해석을 경계하여야 함

3) 충분가공원칙 사례

▶ 마른 멸치 제조공정



▶ 마른 멸치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 완제품의 HS 앞 4단위 ≠ 비원산지 원재료의 HS 앞 4단위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 충분가공원칙 검토

한국에서 단순히 햇빛에 말려 건조하는 과정만 하였기 때문에 FTA 협정에서 규정한 불인정 공정에 해당됨.

▶ 결론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충분가공원칙을 충족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 함.

라. 직접운송원칙

1) 의의

직접운송원칙이란 당해 물품이 수출 당사국을 출발하여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FTA 혜택을 제공한다는 기본원칙임.

2) 예외규정

제3국을 거쳐 물품이 운송될 경우 제3국 세관 통제 하에 있었고 각각의 FTA 협정에서 정한 작업 범위를 준수하였음을 서류로 입증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봄.

동 내용은 '8. 운송원칙 확인' 부분에서 상세히 기술함.

3. 품목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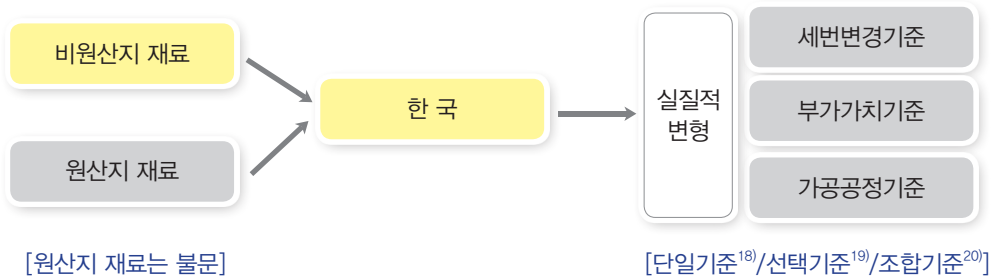
가. 개요

1) 의의

품목별 기준(PSR:Product Specific Rules)이란 불완전생산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임.

불완전 생산품이란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또는 비원산지 재료만으로 제조·생산·가공한 물품을 말함.

각각의 FTA 협정에서 HS Code 2단위·4단위·6단위별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가공공정기준으로 나타남.



18) 단일기준 : 품목별 기준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중 하나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19) 선택기준 : 품목별 기준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중 두 가지 이상 규정되어 있으며, 이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20) 조합기준 : 품목별 기준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중 두 가지 이상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2)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

① 원산지재료

FTA 협정문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를 말함.

② 비원산지재료

FTA 협정문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재료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재료를 말함.

③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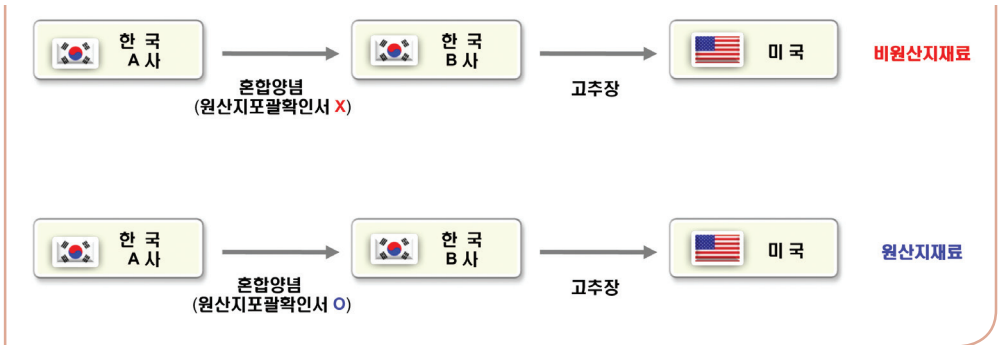
원재료 조달방식	원산지	조 건
국내조달	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원산지(포괄)확인서 보유)
	비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원산지 미상 • 원산지결정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원산지(포괄)확인서 미수취
수입	원산지	• FTA 협정 상대국에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원산지 증명서 보유)
	비원산지	• FTA 수출국 이외 국가로부터 수입 • FTA 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한 재료 중 원산지 결정 기준 불충족 • FTA 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한 재료 중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원산지 증명서 미보유
자가생산 ²¹⁾	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비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한국에서 제조한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FTA 협정문에서 규정한 원산지 재료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재료는 비원산지 재료에 해당됨에 주의.

<예>



21) 자가생산 : 제품 생산자가 생산한 중간 재료를 말함.



나. 세번변경기준

1) 의의

세번변경기준이란 당해 물품의 HS Code와 비원산지 재료의 HS Code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

※ 원산지 재료의 세번 변경 여부는 불문

2) 유형

가) 2단위 세번변경기준 (CC:Change of Chapter)

당해 물품의 HS 앞 2단위와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2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

▶ 사례 1

들기름 (HS 1515, 한-미 FTA 품목별 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501호 내지 제151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들깨
(HS 1209) - 중국산

→ 착유



들기름 (HS 1515)

중국산 비원산지재료인 들깨(제12류)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착유 과정을 거쳐 생산한 들기름(제15류)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2단위와 완제품인 들기름의 HS 앞 2단위가 다르므로 들기름에 대한 한-미 FTA 품목별 기준을 충족함.

▶ 사례 2

건조 양파 (HS 0712, 한-미 FTA 품목별 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701호 내지 제07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신선 양파
(HS 0703) - 중국산

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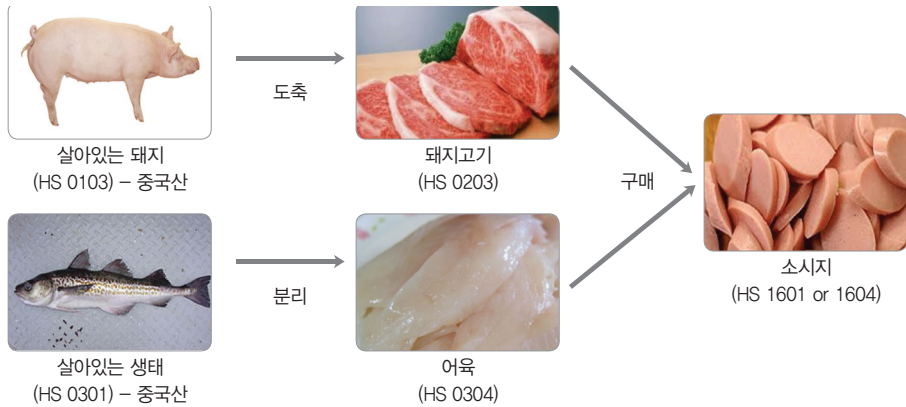
건조 양파
(HS 0712)

중국산 비원산지재료인 신선 양파(제07류)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건조 과정을 거쳐 생산한 건조 양파(제07류)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2단위와 완제품인 건조 양파의 HS 앞 2단위가 같으므로 건조 양파에 대한 한-미 FTA 품목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함.

▶ 사례 3

육류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HS 1601, 한-EU FTA 품목별 기준)

제1류의 동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 재료는 제약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것



중국산 비원산지재료인 돼지(제01류)를 도축한 돼지고기(제02류)와 중국산 비원산지재료인 생채(제03류)에서 분리한 어육(제03류)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생산한 소시지(제16류)를 EU로 수출하는 경우 돼지(제01류)는 비원산지 재료이더라도 상관없으나 생채(제03류)는 한국에서 수렵 등을 하여 잡은 경우에 한하여 소시지(제16류)의 원산지가 충족되므로 동 사례의 경우 원산지 불충족. 이 경우에는 생채를 한국산 또는 EU산으로 변경하여야 한-EU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

나)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Change of Tariff Heading)

당해 물품의 HS 앞 4단위와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4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

▶ 사례 1

캔디 (HS 1704, 한-미 FTA 품목별 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7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설탕(HS 1701) - 중국산
 딸기향료(HS 3302) - 중국산
 딸기색소(HS 3203) - 중국산
 물엿(HS 1702) - 중국산

제조



캔디(HS 1704)

비원산지(중국산)재료를 구매하여 한국에서 생산한 캔디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4단위와 완제품인 캔디의 HS 앞 4단위가 모두 다르므로 캔디에 대한 한-미 FTA 품목별 기준을 충족함.

▶ 사례 2

캔디 (HS 1704, 한-EU FTA 품목별 기준)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설탕(HS 1701) - 한국산
 딸기향료(HS 3302) - 중국산
 딸기색소(HS 3203) - 중국산
 물엿(HS 1702) - 중국산, 100원

제조



캔디(HS 1704)
 EXW 1,000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제17류(당류와 설탕과자)의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캔디의 공장도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첫 번째,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4단위와 완제품인 캔디의 HS 앞 4단위가 모두 다르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함.

두 번째, 제17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중국산)재료인 물엿의 가격[100원]이 캔디의 공장도가격[1,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이므로 두 번째 기준도 충족함.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한-EU FTA 품목별 기준을 충족함.

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당해 물품의 HS 앞 6단위와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

▶ 사례 1

볶은 커피 (HS 0901.21, 한-미 FTA 품목별 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볶지 않은 커피
(HS 0901.11) - 브라질산

Roasting →



볶은 커피
(HS 0901.21)

비원산지(브라질산)재료인 볶지 않은 커피(HS 0901.11)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볶는 공정을 거쳐 생산한 볶은 커피(HS 0901.21)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6단위와 완제품의 HS 앞 6단위가 다르므로 볶은 커피에 대한 한-미 FTA 품목별 기준을 충족함.

다. 부가가치기준

1) 의의

부가가치기준이란 물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

2)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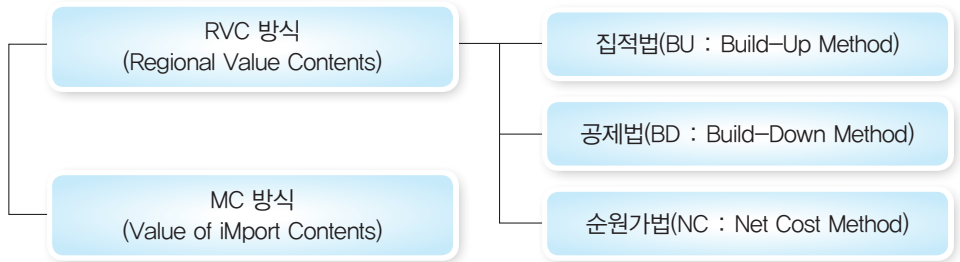
① 역내가치비율(RVC:Regional Value Contents) 방식

: FTA 영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비율이 일정비율 이상 요구되는 방식.
이에는 집적법, 공제법, 순원가법이 있음.

※ 농식품과 관련하여 순원가법을 적용하는 FTA는 없음

② 역외가치비율(MC:value of iMport Contents) 방식

: FTA 영역 밖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방식.



3) 부가가치비율 계산방법

가) 집적법 (BU : Build-Up Method)

당해 물품 조정가격에서 원산지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

$$\text{집적법} = \frac{\text{원산지 재료의 가격}}{\text{상품의 조정가격(FOB)}} \times 100$$

나) 공제법 (BD : Build-Down Method)

당해 물품 조정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비를 공제한 금액을 당해 물품 조정가격으로 나눈 다음 이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방법

$$\text{공제법} = \frac{\text{물품의 조정가격(FOB)} - \text{비원산지 재료의 가격}}{\text{물품의 조정가격(FOB)}} \times 100$$

다) MC법 (value of iMport Contents)

비원산지 재료비를 공장도가격(EXW)으로 나눈 다음 이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방법.

$$\text{MC법} = \frac{\text{비원산지 재료의 가격}}{\text{물품의 공장도가격(EXW)}} \times 100$$

※ EXW :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당사국 내의 제조자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제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되어야 할 모든 내국세를 공제

22)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 수출자가 수출화물을 선박에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

23) 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 : 제조자의 공장에서 수입자가 인수하는 무역거래조건

4) 농식품 관련 FTA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유형

FTA 협정마다 사용가능한 부가가치기준이 정해져 있음.

칠레 · 페루 · 미국 · 호주 · 베트남 · 뉴질랜드 · 콜롬비아	싱가포르 · 아세안 · 인도 · 중국	EU · EFTA · 터키 · 캐나다
집적법 공제법	공제법	MC

라. 가공공정기준

1) 의의

특정 제조 방법 · 가공 공정을 수행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임.

2) 사례

FTA	기준	규정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개별기준	대부분 세번변경기준
	공통기준	제2부 '주'에서 역외산 씨앗 등을 심어 역내에서 재배한 경우 세번변경기준 여부를 불문하고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 농식품에서는 가공공정기준이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음.

2) 유형

특례	내용
누적기준	원산지 결정시 상대방 국가 또는 다른 생산자에 의해 발생한 생산 과정 투입 요소(재료, 상품, 공정)를 자국에서 투입한 것과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최소기준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당해 물품의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할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규정(미소기준)
중간재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상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를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s, Self-produced Materials)라고 하며 중간재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그 중간재 취득비용 전체를 원산지 재료가격으로 처리하라는 규정
대체가능 물품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원산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상업적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재료를 대체가능물품이라 하며, 대체 가능한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물품이 서로 혼합된 경우 생산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
세트물품	통칙 3에 의거한 세트물품에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된 경우로서 FTA 협정에서 정한 세트물품의 비원산지 상품 허용한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세트 구성물품 전체를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하는 규정
간접재료	상품의 생산·검사 과정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물품 또는 설비·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를 간접재료(중립요소)라고 하며, 간접재료는 상품을 직접 구성하지 않고, 사용량이 미미하므로 원산지를 불문 하거나, 원산지 재료로 간주하는 규정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부속품· 예비 부분품· 공구 등은 본 제품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통상 부속품· 예비 부분품 및 공구로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따르도록 하는 규정
소매용 포장· 용기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상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에 대하여는 각각 원산지를 확인하여 정하게 되나, 전동공구 케이스와 같은 소매용 포장· 용기의 경우 본체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결정하는 특례
운송용 포장, 용기	운송용 포장 및 용기는 물품을 구성하는 구성 단위가 아니며 거래가격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모든 FTA에서 상품의 원산지 결정시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준

※ 상기 특례조항은 FTA 협정마다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각각의 FTA 협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분야별 특례에 대하여 '기본편'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활용편'에서 설명하기로 함.

5.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방법

가. FTA 협정문

①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 접속 → '우리나라 FTA' 클릭



② 발효된 FTA 중 해당하는 FTA 클릭 → 원산지 결정기준 파악

우리나라 FTA
> 우리나라의 FTA

FTA 일반

FTA의 개념
FTA 주요내용
전세계 FTA 체결현황

우리나라의 FTA

FTA 정책요약
현황

발효

- 한-칠레 FTA
- 한-싱가포르 FTA
- 한-EFTA FTA
- 한-ASEAN FTA
- 한-인도 CEPA
- 한-EU FTA
- 한-페루 FTA
- 한-미 FTA
- 한-티키 FTA
- 한-호주 FTA
- 한-캐나다 FTA
- 한-중 FTA
- 한-뉴질랜드 FTA
- 한-베트남 FTA
- 한-콜롬비아 FTA

한-칠레 FTA HOME > 우리나라 FTA > 우리나라의 FTA > 발효 > 한-칠레 FTA

PRINT

개요	협정문 및 기본문서	국가정보	원산지정보	인론동향	참고자료
----	------------	------	-------	------	------

2004년 04월 01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의 첫 FTA이며,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끼리의 첫 FTA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지구 반대편의 유망시장인 중남미로 **우리 기업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 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 하였다는 점에서 한·칠레 FTA타결이 주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드디어 FTA체결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협정문

수출 관세율

수입 관세율

나. 관세청 YES FTA

① ‘관세청 YES FTA(<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ftaportalkor>)’ 접속 → ‘원산지 기준’ 클릭

통합검색

HOT >

FTA일반현황

FTA활용

원산지검증

FTA기업지원

FTA자료실

고객의소리

MY 메뉴 설정하기를 통해 즐겨찾는 메뉴를 선택하세요

원산지기준(PSR)

FTA수출세율

FTA수입세율

원산지증명서발급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검증진행

대한민국 경제영토의 확장 **FTA**

② '국가' 선택 → 'HS 코드' 선택 → 'HS 6단위' 입력 → 'search' 클릭 → '원산지 기준' 확인

전체
All FTA

칠레 Chile

싱가포르 Singapore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아세안 ASEAN

인도 India

유럽연합 EU

페루 Peru

미국 USA

터키 Turkey

호주 Australia

캐나다 Canada

뉴질랜드 New Zealand

중국 China

한-베트남 Vietnam

한-콜롬비아 Colombia

검색
search

HS코드(HS Code)

한글 품목명(Korea Item Name)

영문 품목명(English Item Name)

search

21		각종의 조제식료품 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s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Sauces and preparations thereof; mixed condiments and mixed seasoning; mustard flour and meal and prepared mustard.	

품목번호 HS	분류 Division	품목명 Item	원산지 기준 Preference Criterion	C/O 기재방 법 Described how the C/O
210310	1	간장 Soya sauce	4단위 세번 변경 기준	CTH

6

원산지 결정기준별 원재료 관리 전략

물품의 품목별 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인데, 국내에서 공급받은 원재료 A와 완제품 B의 HS 앞 4단위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원재료 A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가 충족된 원산지(포괄) 확인서를 수취하면 그 원재료는 원산지 재료로 봐요. 4단위 세번변경 기준에서는 원산지 재료 A의 HS 앞 4단위가 완제품 B와 동일하더라도 괜찮아요.



1. 의의

물품 자체만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재료 중 원산지 재료가 아닌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입증서류 수취를 통해 원산지 재료로 변경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전략.

2. 원재료 관리 전략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 기준	조 건
세번변경기준	원재료의 HS Code가 수출물품의 HS Code와 동일한 경우
부가가치기준	자체 BOM 만으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

3. 원산지관리전략

원재료		원산지 관리 전략
수입	FTA협정국 X	FTA 협정국으로의 원재료 수입선 전환
	FTA협정국 O	원산지 증명서류(FTA 원산지 증명서) 수취
국내	국내 제조 O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수취

▶ Q&A. 원산지 결정기준별 원재료 관리 전략

질문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어떤 양식이며,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5]’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 → 통합검색 란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양식 과 작성방법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한국에서 구매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입증서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만 해당 되나요 ?

답변 아니요.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같음하여 농수산물 1차 산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있습니다.

2017년 12월 현재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서류명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지리적 표시 등록증
수산물	물김 수매 확인서
	마른김 수매 확인서
	수산물 품질인증서
	수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증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
축산물	축산품(소)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돼지)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계란, 닭, 오리) 등급판정확인서
전통식품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예〉

배(pears)에 대하여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지리적 표시 등록증·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중 하나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원산지(포괄)확인서로 간주함.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 → 통합검색 란에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입력하고 검색하면 확인 가능함.

질문 배(pears)에 대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으면, 재배·수확한 기록은 구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아니요.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향후 세관에서 원산지를 확인할 때 배(pears)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배·수확에 대한 기록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정확성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7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1. 세번변경기준 적용 사례

한국에서 생산한 홍삼절편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한-중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함.

가. 물품 설명

물품	설명	
홍삼절편	홍삼을 슬라이스한 후, 설탕·벌꿀·결정과당 등과 혼합한 당침액에 당침하여 만든 홍삼절편	

나. 한국 관세청 사례

참 조 번 호	품목분류2과-12840
시 행 일 자	2016-09-13
시 행 기 관	관세평가분류원
결 정 세 번	2008.99-9000
품 명	Red ginseng preparation; 고려홍삼절편삼 ; R.KOREA
물 품 설 명	인삼(수삼)을 일정 크기로 자른 후 벌꿀, 과당을 넣은 찜기에 넣어 당침 및 건조하여 만든 갈색계 홍삼 절편을 소매 포장(내용량:20g) - 용도 : 식용(기호에 따라 1~2편 섭취)
사 진	

다. 중국 HS 및 관세율

중국 HS	품 명	중국 관세율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99.90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미적용 : 15% ▶ FTA 적용 : 10.5%

한-중 FTA 적용시 중국 측 관세가 2017년 현재 4.5% 만큼 절감되므로, FTA 준비 실익 있음.

라.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확인

FTA 협정	원산지기준
중국	2단위 세번변경기준

마. FTA용 BOM 작성 및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 (Bill of Materials)

- 품명/규격 : 홍삼절편/20g*10EA
- 업체명 : A사
- HS Code : 2008.99
- 담당 : 홍길동

No.	원재료명	HS	원산지	비율	구매처
1	홍삼	1211.20	미상	70%	B사
2	홍삼농축액	1302.19	미상	1%	C사
3	백설탕	1701.99	미상	20%	D사
4	벌꿀	0409.00	미상	4%	E사
5	결정과당	1702.60	미상	5%	F사

※ 완제품 1개 당 소요되는 부품을 기준으로 작성함

FTA용 BOM은 홍삼절편을 만드는 제조자가 제조공장에 입고된 원재료를 기준으로 원재료명을 작성하여야 함.


구매처로부터 원산지 입증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원재료의 원산지 부분에 ‘미상’ 또는 ‘비원산지’로 기재.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2단위와 완제품인 홍삼절편의 HS 앞 2단위가 모두 다르므로 홍삼절편에 대한 한-중 FTA 품목별 기준을 충족함.

2. 부가가치기준 적용 사례

한국에서 태국으로 김치를 수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한-아세안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함.

가. 물품 설명

물품	설명	
김치	배추에 무채, 고춧가루, 마늘, 소금 등을 첨가하여 만든 김치	

나. 한국 HS 규정

HSK				품명
20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99			기타
		10	00	김치

다. 태국 HS 및 관세율

태국 HS	품 명	태국 관세율
20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 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99.90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미적용 : 30% 또는 25.00바트/kg 중 고액(율) ▶ FTA 적용 : 0%

한-아세안 FTA 적용시 태국 측 관세가 2017년 현재 30% 또는 25바트/KG만큼 절감되므로, FTA 준비 실익 있음.

라.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확인

FTA 협정	원산지기준
아세안	한국의 HS 제2005.99.1000호(김치)에 대해서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마. FTA용 BOM 작성 및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 (Bill of Materials)

- 품명/규격 : 김치/5Kg
- 업체명 : A사
- HS Code : 2005.99
- 담당 : 김철수 실장

No	원재료명	HS	원산지	수 량		단 가	가격소계	구매처
1	배추	0704.90	미상	3.30	KG	700	2,310	B사
2	무채	0706.90	미상	0.50	KG	900	450	C사
3	고추가루	0904.22	미상	0.20	KG	11,000	2,200	D사
4	마늘	0703.20	미상	0.10	KG	6,000	600	E사
5	생강	0910.11	미상	0.05	KG	8,500	425	F사
6	소금	2501.00	미상	0.70	KG	1,000	700	G사
7	멸치액젓	1603.00	미상	0.10	KG	1,200	60	H사
8	정백당	1701.99	미상	0.03	KG	900	27	I사
9	다시마육수분말	2103.90	미상	0.02	KG	9,000	180	J사
10	포장재(PE)	3923.21	미상	1.00	PC	50	50	K사
11	케이블타이	3926.90	미상	1.00	PC	20	20	L사
12	스치로폼 박스	3923.10	미상	1.00	PC	1,000	1,000	M사
13	아이스팩	3824.99	미상	1.00	PC	150	150	N사
역내산(원산지) 재료 가치의 합계							0	
비역내산(비원산지) 재료 가치의 합계							8,232	
합계							8,232	

※ 완제품 1개 당 소요되는 부품을 기준으로 작성함

** 부가가치 기준

RVC(공제법-아세안)

구분	A =비원산지재료비	환율	FOB (USD)	B =FOB(원화)	공제법 =(B-A)/B
원	8,232	1,100	25	27,500	70.07%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입증서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원재료를 비원산지재료로 보고 김치의 FOB 가격(27,500원)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8,232원)을 공제한 금액을 김치의 FOB 가격(27,500원)으로 나눈 비율이 70.07%이므로 김치에 대한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함.

▶ Q&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질문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 누락 여부?

FTA용 BOM 작성시 제조자가 구매한 당해 물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재료를 기재하여야 하며, 주요 원재료만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비원산지 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처리 여부?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원산지 입증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제조·가공한 원재료라 하더라도 비원산지 재료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③ 비원산지 재료의 HS 중 물품의 HS와 동일한 것이 없는지?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 재료의 HS와 물품의 HS를 정확하게 분류한 후 비원산지재료와 물품의 HS가 모두 다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질문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 누락 여부?

FTA용 BOM 작성시 제조자가 구매한 당해 물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재료를 기재하여야 하며, 주요 원재료만 기재하여서는 안 됨.

② 비원산지 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처리 여부?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원산지 입증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제조·가공한 원재료라 하더라도 비원산지 재료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③ 비원산지 재료의 수량(소요량) 및 단가 적정 여부?

비원산지 재료의 수량(소요량)이 제조공정도 등과 일치하여야 하며, 비원산지 재료의 단가가 원재료 구매입증서류(세금계산서 등)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④ FTA 협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기준을 계산하였는지 여부?

‘4.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언급한 ‘부가가치비율 계산방법 및 FTA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유형’ 내용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8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

EU 바이어와 10,000 EURO
무역계약을 체결했는데
FTA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네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요?

한-EU FTA에서 INVOICE
기준으로 6,000EURO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만이 한-EU FTA 원산지
증명을 작성할 권한이 있어요.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후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INVOICE에 원산지
문구를 적어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1. 원산지 증명서류

원산지 증명서류란 FTA 협정 상 발행 권한이 있는 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정 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서식을 말함.

2. FTA 협정별 원산지 증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접속하여 통합검색 란에 원산지증명서 서식명을 검색하면 서식 및 작성요령 확인 가능.

FTA협정	원산지증명서식
한-칠레	[별지 제8호 서식]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한-싱가포르	[별지 제10호 서식]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9호 서식]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한-EFTA	[별표 16]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별지 제11호 서식]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스위스치즈 원산지증명서
한-아세안	[별지 제12호 서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한-인도	[별지 제14호 서식]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한-EU	[별표 17]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한-페루	[별지 제15호 서식] 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가 부록 4-가-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별표 18]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한-미국	[별지 제17호 서식]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한-터키	[별표 19]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한-호주	[별지 제19호 서식]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FTA협정	원산지증명서식
한-캐나다	[별지 제20호 서식]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한-중	[별지 제24호 서식]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한-베트남	[별지 제22호 서식]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한-뉴질랜드	[별표 20호 서식]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별지 제21호 서식]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한-콜롬비아	[별지 제18호 서식]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3. 원산지 증명 방식

① 기관 발급

원산지 국가의 세관 및 그 밖의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한국의 경우 상공회의소)이 신청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

② 자율 발급

수출자 등이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

4. FTA 협정별 원산지 증명방법

구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페루
발급 방식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발급 주체	수출자	·싱:세관 ·한:세관, 자유무역 관리원, 상의	수출자 (선적이후 생산자 可)	·아:정부기관 ·한:세관, 상의	·한:수출검사 위원회 ·한:세관, 상의	수출자 (EUR 6,000 초과인 경우 인증수출자 필수)	수출자
증명서 서식	통일서식	각자 증명서식	송품장	통일서식 - AK 서식	통일서식 - KIN 서식	송품장	통일서식
유효기간	2년	1년	1년	12개월	12개월	1년	1년

구분	한·미국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발급 방식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호주: 자율발급, 기관발급 선택)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발급 주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기관(호주)	수출자 생산자	중: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총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 세관, 상의	베트남: 산업 무역부 한국: 세관, 상의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생산자
증명서 서식	규정양식 없음 권고서식	송품장	통일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송품장 통일서식	통일서식
유효기간	4년	1년	2년	2년	1년	1년	2년	1년

▶ Q&A.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

질문 한-미 FTA에서는 수입자도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이니까 한국으로 수입할 때 수입자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답변 한-미 FTA에서는 수입자도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수입국 세관에서 원산지 입증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산지 입증서류란 원재료 구매부터 수출까지의 자료도 포함되며, 현실적으로 미국 수출자가 그러한 서류를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 INVOICE 기준으로 6,000 EURO 이하 물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세관에서 인증수출자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6,000 EURO 이하인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INVOICE에 원산지 신고서 문구를 적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질문 인증수출자 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YES FTA’ 접속 → ‘FTA 활용’ 클릭 → ‘인증수출자 제도’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9

운송원칙 확인

한국에서 수출된 물품이 홍콩에서 수입 통관된 후 추가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EU로 운송되는 경우 운송원칙을 충족하나요?

아니요. 한-EU FTA에서 제3국 경유시 제3국 세관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 즉 수입 통관되어 제3국 물품이 된 경우 운송원칙 불충족으로 한-EU FTA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1. 운송원칙 개요

직접운송원칙이란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수출 물품이 수출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수입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FTA 특혜를 제공한다는 기본원칙임.

제3국을 거치더라도 각각의 FTA 협정에서 정한 조건을 준수하였음을 서류로 입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봄.

2. 제3국 경유시 조건

제3국 세관 통제 하(=보세구역)에 있어야 하며 하선, 재선적, 상품을 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 이외의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모든 FTA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각 FTA 별로 추가적으로 제3국 경유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제3국 경유시 조건	FTA
하선, 재선적, 상품 보관 필요 작업, 제3국 세관 통제	모든 FTA
단일 탁송 화물 ²⁴⁾	한·EFTA, 한·EU, 한·터키 FTA
탁송품의 분리	한·EFTA FTA
제3국 거래·소비 금지	한·아세안, 한·인도, 한·페루, 한·캐나다, 한·중,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FTA
지리적·운송상의 이유	한·아세안, 한·중, 한·베트남 FTA
제3국 BWT ²⁵⁾ 거래 인정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미국,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
재라벨링	한·호주 FTA
파이프라인 운송	한·EFTA FTA
통과선하증권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복합·결합 운송서류 / 비가공증명서	한·중 FTA

3. 운송원칙 관련 사례

가. 통과선하증권(한-아세안 FTA)

1) 거래 개요



24) 단일탁송화물 :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하나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선적되거나, 하나의 INVOICE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25)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보세창고 인도거래) : 관세를 보류한(=보세) 창고에 물품이 있을 때 거래되는 형태를 말함

2) 한-아세안 FTA 운송 규정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9조.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3 제9조의 이행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3) 판단

통과선하증권이란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B/L을 말함.(선적지 인도네시아, 도착지 한국, 경유지 싱가포르로 기재된 B/L)

수입신고시 제시된 B/L은 선적지 싱가포르, 도착지 한국으로 된 B/L이므로 세관에서 한-아세안 FTA 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세 등 000억원을 추징함.

나. 비가공 증명서 (한-중 FTA)

1) 거래 개요



2) 판단

홍콩은 한-중 FTA에서는 제3국에 해당되며, 홍콩에서 컨테이너 하역·재선적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가공 증명서가 필요함.

▶ Q&A.운송원칙 확인

질문 홍콩세관에서 발급하는 비가공 증명서는 수입 후에도 발행되나요?

답변 홍콩세관 도착 하루 전까지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질문 중국 물품이 홍콩을 거쳐 한국으로 운송되는 형태가 다양한데, 모든 경우에 홍콩 세관에서 발행한 비가공 증명서가 필요하나요?

답변 컨테이너 실(seal)을 제거하지 않고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에는 비가공증명서가 불필요하고, 홍콩에서 화물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필요해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YES FTA' 접속 → '공지사항' 클릭 → 제목 란에 '비가공증명서' 입력하고 검색 버튼 누름 → 검색된 공지사항 중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수정 안내' 클릭하여 내용 확인.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중국 해관에서 적용하는 비가공 증명서 관련 내용을 수입자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홍콩 도착 하루 전까지 비가공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10 FTA 서류 보관

FTA용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하였으니 FTA 관련
자료는 폐기해도 되나요?



아니요. 수입국 세관에서 나중에
FTA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꼭 보관해야 해요.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수입자가 받은 FTA
혜택이 취소되니까 주의하세요.



1. FTA 서류 보관 개요

FTA 관련 서류는 원재료 투입부터 제품 생산 및 수출 관련 자료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료를 말함.

2. 원재료 투입부터 제품 생산 및 수출 관련 자료

- ① 원재료 구매 내역(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증 등)
- ②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 FTA용 BOM)
- ③ 제조공정도
- ④ 원재료 입고대장 · 제품 출고대장 등
- ⑤ 원산지 소명서(기관발급, 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
- ⑥ 수출신고필증 · B/L 등 수출 관련 자료

3.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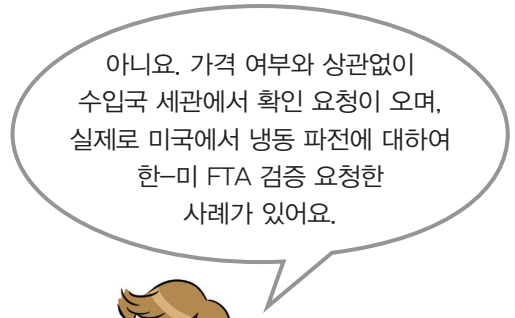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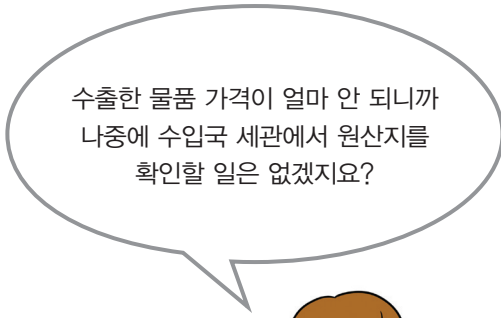
- ① 세번변경기준의 경우에는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근거자료
- ② 부가가치기준의 경우에는 재료비의 적정성 관련 자료(단가가 나와 있는 원재료 구매내역, 소요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부가가치기준 상 분모가격(EXW 가격, FOB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국내운송비용, 해상운송비용, 해상보험료 등)
- ③ 가공공정기준의 경우에는 FTA 협정에서 정한 가공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 ④ 원재료가 원산지 재료인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 ⑤ 기타 분야별 특례를 사용하였다면 그 증빙자료

▶ Q&A.FTA 서류 보관

질문 FTA 관련 자료는 몇 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나요?

답변 한-중 FTA는 3년, 나머지 FTA는 5년간 FTA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보관하지 않을 경우 수입자가 FTA 혜택을 받았던 관세 등을 수입국 세관에 추징당할 수 있으며, 수출자의 경우 FTA 특례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하세요.

11 원산지 검증



1. 원산지 검증 개요

원산지 검증(=원산지 조사)이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말함.

2. 원산지 검증 방법

① 직접 검증

수입국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검증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는 것

② 간접 검증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게 원산지 검증을 의뢰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이 검증을 수행하는 것

3. FTA 협정별 검증 규정

구분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선)간접 (후)직접	(선)간접 (후)직접			일반	섬유
검증 방식	직접	간접	(선)간접 (후)직접	(선)간접	(후)직접	간접	(선)간접 (후)직접	직접	간접 직접
회신 기한	30일	10개월	2개월	3개월	30일	10개월	수입(출)자 90일, 수출관세 당국150일	- (1개월)	간접: 12개월

구분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수입자	수출자			수입 (출)자 등	수출국 관세 당국
검증 방식	간접	직접 (간접 병행)	직접	직접	(선)간접 (후)직접	(선)간접 (후)직접	직접	간접 / 직접	
회신 기한	10개월	30일	- (1월)	1개월	6개월	6개월	90일	30일	150일

▶ Q&A.원산지 검증 확인

질문 미국 수입자가 미국 세관에서 FTA 검증이 나왔다고 하면서 정보요청서 (REQUEST FOR INFORMATION)를 보내왔는데,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답변 정보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오른쪽 상단에 '1.요청일자(Date of Request)로부터 30일 이내에 FTA 관련 자료를 영어로 번역해 보내야 해요.(기간 연장 30일 가능)

※ 원산지 검증시 회신기간이 경과하여 회신하는 경우에는 FTA 특혜관세가 부인됨에 주의.

Ⅱ. 활용편

활용편에서는 aT가 추진한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사업의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FTA 활용을 위해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이슈(10선)를 소개하고 적절한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사례이므로 내용을 숙지하여 잘 활용한다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01

“FTA를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진행하는 FTA 특혜관세 활용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고 컨설팅을 받으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던데.
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매년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에 선정되면 무료로 FTA
컨설턴트가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FTA 컨설팅을 진행해요.



사업명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사업

사업 목적

농식품분야 원산지 증명 활용을 통한 FTA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

자격요건

농식품 제조 · 수출업체, 수출농산물 생산자조직 · 단체

컨설팅 절차

〈사업 대상업체 선정〉 → 〈FTA 기초교육〉 → 〈FTA 현황분석 및 대상 품목 선정〉 → 〈HS 확인〉 →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 〈FTA용 BOM 구성〉 →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FTA 문제점 확인 및 보완대책 마련〉 → 〈농식품에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FTA-Agri)을 통한 FTA 관리체계 구축〉

문의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홈페이지 <http://www.at.or.kr/>

사업 참여신청 | global.a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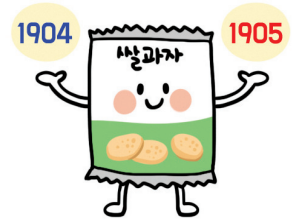
※ ‘활용편’ 사례는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컨설팅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02 “튀긴쌀 vs 쌀과자, HS Code는 무엇일까요?”

식품수출기업 쌀과자 HS Code를 분류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유형 품목분류 오류

품목 쌀과자(미과)



이번에 수출하는
쌀과자 HS Code 말야. 당연히
“1905”에 분류될 거야. 그렇지?
관세율표에 “쌀과자”라고 나와
있잖아.



품명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빵 튀겨서 만든 쌀과자는 “1905”가
아니에요. 우리 제품은 “1904”에
분류되어야 해요.



1. 물품 설명

물품	쌀과자	
설명	열로 팽창시켜 조리한 쌀에 설탕, 콘시럽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크기의 대롱모양으로 성형한 조제품	
제조과정	① 쌀을 팽창시킴 ② 설탕·콘시럽·올리고당으로 시럽 제조 ③ 팽창시킨 쌀과 시럽을 혼합 ④ 대롱모양으로 성형 후 절단 ⑤ 건조 및 포장	



2. HS Code 구조

HS			품명
1904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30 00	튀긴 쌀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 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90		기타
		10	베이커리 제품
		50	쌀과자

3. 쟁점사항

- ① HS 1904.10.3000에 해당하는 '쌀을 팽창시켜서 얻은 조제 식료품'으로 분류해야 된다는 의견
- ② HS 1905.90.1050에 해당하는 '쌀과자'로 분류해야 된다는 의견

4. 관세청 결정 HS Code

4단위 HS Code를 결정한 후 그 범위 안에서 5단위·6단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HS 제1904호에서는 ‘곡물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을 규정하고 있고, 제1905호에서는 ‘베이커리 제품’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1904호 관련 규정에서 ‘튀긴 쌀은 축축하게 해서 열실에 넣고 압력을 가한 다음, 갑자기 압력을 제거시키고 찬 공기 밖으로 분출시킴으로써 낱알을 원래 크기의 몇 배로 팽창시켜서 만들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쟁점 물품의 제조과정 상 쌀을 팽창시켜 만든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 1904.10.3000에 분류함.

5. 중국 관세율 비교

구분	중국 HS	관세율	
		FTA 미적용	FTA 적용
정	1904.10.00	25.00%	21.20%
오	1905.90.00	20.00%	17.00%

→ 중국 수입 통관시 HS 1905.90.00, FTA 관세율 17%로 수입신고하였다면, 나중에 중국 해관에서 HS 1904.10.00, FTA 관세율 21.20%가 적정하다고 하여 관세 차액 4.2%만큼 추징할 수 있음.

6. 한-EU FTA 원산지 기준 비교

구분	HS	원산지기준	비고
정	1904.10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1806호의 것은 제외 - 사용된 제10류와 제11류의 모든 곡물과 분말(다만, 듀럼밀과 경립종 옥수수 및 그 부산물을 제외한다)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제품의 공장도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중국산 쌀 사용 불가
오	1905.90 (미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중국산 쌀 사용 가능

→ 중국산 쌀로 만든 쌀과자를 EU로 수출시 HS 1905.90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원산지 충족으로 판단하여 한-EU FTA 원산지 증명을 발급했을 것임. 나중에 EU측에서 원산지 검증이 올 경우 적정한 HS CODE가 1904.10이며 중국산 쌀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산지기준을 불충족으로 판단하여 관세 차액만큼 추징할 수 있음.

7. 유사사례

참 조 번 호	품목분류2과-7072
시 행 일 자	2017-06-13
유 호 일 자	2020-06-12
시 행 기 관	관세평가분류원
결 정 세 번	1904.10-3000
품 명	Puffed rice ; Puffed Rice chip ; PR.CHNA
물 품 설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낱알 모양의 쌀을 팽창시키며 지름 약 4.5cm, 두께 1cm 내외의 원형 상으로 압출 성형한 것 - 용도 : 식용
사 진	

8.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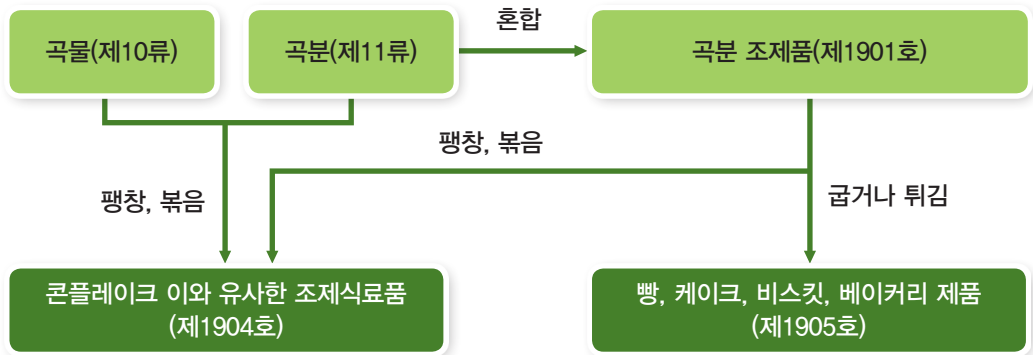
단순히 관세율표상 품명만 보고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가. 대응방안 1

HS Code를 확인하려는 경우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제조공정, 구체적인 용도 등을 자세히 파악한 후, HS 전문가인 관세사 자문을 통해 HS Code를 확인함.

〈예〉

곡물 · 곡분 및 이들 조제식료품의 HS 체계



나. 대응방안 2

관세사 자문,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HS Code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세청의 유권해석인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쌀과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사업 진행시 실제로 품목 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관세청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임.)

※ '기본편'의 '수출물품 HS Code 확인' 내용 중 '품목분류 사전심사 절차' 참조.



Key Point

HS Code에 따라 기준세율, FTA 관세율, 원산지 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사항임.

03 “수입국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 제품의 원산지”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유형 FTA 협정별로 상이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

품목 김치




EU로 김치를 수출할 때
배추 등 신선식품이 한국에서 재배·
수확되어야 한다는 기준이기 때문에 FTA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미국으로 수출할 때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아니요. 배추 등 신선식품이
모두 중국산이라도 한국에서 김치를
제조하였다면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가 한국이에요.



1. 물품 설명 및 HS

물품	김치	
설명	배추에 무채, 고춧가루, 양파, 배, 마늘 등을 첨가하여 만든 김치.	
HS	2005.99.1000	

2. 김치에 대한 한-EU FTA 검토

가. FTA용 BOM

A사는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지 않았으며, FTA용 BOM은 다음과 같음.

소요부품(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 품명 : 김치
- HS Code : 2005.99
- 협정 : 한-EU FTA
- 업체명 : A사
- 담당 : 홍길동
- 공장도가격 : 10,000원

No.	원재료명	HS	원산지	비율	구매처
1	배추	0704.90	미상	65%	B사
2	무채	0706.90	미상	5%	C사
3	고춧가루	0904.22	미상	10%	D사
4	배	0808.30	미상	2%	F사
5	마늘	0703.20	미상	5%	G사
6	소금	2501.00	미상	3%	H사
7	멸치액젓	1603.00	미상	7%	I사
8	설탕	1701.99	미상	3% (100원)	J사

※ 원재료 구매처로부터 원산지 입증서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원재료의 원산지를 '미상' 또는 '비원산지'로 기재

나. 한-EU FTA 원산지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① 김치를 만드는데 사용된 제7류에 해당하는 배추·무채·양파·마늘 등과 제8류에 해당하는 배는 한국에서 재배·수확한 것이어야 함.
- ② 제17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인 설탕의 가격이 김치의 공장도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됨.

다. 한-EU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제17류의 설탕 가격(100원)이 김치 공장도가격(10,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이므로 두 번째 규정은 충족하나, 제7류·제8류에 해당하는 배추·무채·배·마늘이 한국산이 아니거나 한국산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재배·수확되었다는 원산지 입증서류를 원재료 구매처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첫 번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현재 BOM 상으로는 한-EU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함.

라. 대응방안

한-EU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재배·수확된 배추·무채·배·마늘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매처로부터 원산지 입증서류를 받아야 함.

3. 김치에 대한 한-미 FTA 검토

가. FTA 용 BOM

A사는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지 않았으며, FTA용 BOM은 다음과 같음.

소요부품(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 품명 : 김치
- HS Code : 2005.99
- 협정 : 한-미 FTA
- 업체명 : A사
- 담당 : 홍길동
- 공장도가격 : 10,000원

No.	원재료명	HS	원산지	비율	구매처
1	배추	0704.90	미상	65%	B사
2	무채	0706.90	미상	5%	C사
3	고춧가루	0904.22	미상	10%	D사
4	배	0808.30	미상	2%	F사
5	마늘	0703.20	미상	5%	G사
6	소금	2501.00	미상	3%	H사
7	멸치액젓	1603.00	미상	7%	I사
8	설탕	1701.99	미상	3%	J사

※ 원재료 구매처로부터 원산지 입증서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원재료의 원산지를 '미상' 또는 '비원산지'로 기재

나.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① 비원산지 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 앞 2단위가 모두 달라야함.(2단위 세번변경기준)
- ② 제조공정이 제20류 주에서 규정한 단순 공정(냉동, 포장, 볶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③ 제0701호에 해당하는 신선·냉장 감자는 원산지 재료이어야 함.

다.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비원산지 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 앞 2단위가 모두 다르므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김치를 만드는 공정은 단순 가공이 아니며 원재료 중 감자가 없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

즉, 현재 BOM 상으로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한국에서 김치를 제조하였다면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

4. 김치에 대한 한-EU·한-미 FTA 비교

구분	한-EU FTA	한-미 FTA
원산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류·제8류 원재료는 한국에서 재배·수확 • 제17류의 비원산지재료 가격/김치 공장도가격)X10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단순공정 이상의 제조공정 • 제0701호(감자)는 원산지재료

구분	한-EU FTA	한-미 FTA
원산지판정	제7류·제8류 원재료에 대한 한국 재배·수확 관련 원산지 입증자료 미확보 → 원산지 불충족	원산지기준 충족(원재료의 원산지 불문)
대응방안	제7류·제8류 원재료에 대한 한국 재배·수확 관련 원산지 입증자료 확보 필요	없음

5. 한-미 FTA 활용 효과

김치에 대한 미국 수출 실적 및 관세액 실익은 다음과 같음.

기간	수출금액 (USD)	FTA 미적용 관세율	FTA 적용 관세율	관세율 차이	관세액 실익 (USD)
2013	4,946,000	11.20%	0.00%	11.20%	553,952
2014	4,936,000	11.20%	0.00%	11.20%	552,832
2015	5,340,000	11.20%	0.00%	11.20%	598,080
2016	6,248,000	11.20%	0.00%	11.20%	699,776
2017	6,531,000	11.20%	0.00%	11.20%	731,472
총계	28,001,000	11.20%	0.00%	11.20%	3,136,112

[출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한-EU FTA와는 달리 한-미 FTA는 한국에서 김치를 제조만 하면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쉬운 원산지 기준에 해당되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김치 수출자가 한-미 FTA를 활용한다면 최근 5년간 김치 수출실적 기준으로 약 313만 달러의 관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음.



Key Point

동일한 수출물품이라 하더라도 FTA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FTA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농식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공산품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FTA 전문가인 관세사 자문·관세청 유권해석 등을 통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FTA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음.

04 “참기름 병까지 원산지를 고려해야 할까요?”

참깨만 한국에서 재배·수확했다면, 참기름 병은 고려 안 해도

유형 완전생산기준 적용시 소매용
포장·용기 고려 유무

품목 참기름




참기름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 기준이 “완전생산기준”이네요.
참기름을 넣은 유리병은 일본에서
수입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재배·수확한 참깨로
참기름을 생산하였다면, 유리병은
원산지가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1. 물품 설명 및 HS

물품	참기름	
설명	참깨를 볶은 후 착유하여 만든 참기름을 플라스틱병에 넣은 상태임. (플라스틱병은 일본산임)	
HS	1515.50.0000	

2. 참기름에 대한 한-중 FTA 검토

가. FTA 용 BOM

A사는 참깨에 대하여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한국에서 재배·수확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았고 다른 원재료에 대하여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지 않았음.

소요부품(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 품명 : 참기름
- HS : 1515.50
- 업체명 : A사
- 담당 : 홍길동

No.	원재료명	HS	원산지	비율
1	참깨	1207.40	KR	91.00%
2	플라스틱병	3923.30	미상(일본)	7.00%
3	라벨(PET)	3926.90	미상	1.00%

※ 참깨는 원재료 구매처로부터 원산지 입증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원산지를 'KR' 또는 '한국'으로, 나머지 원재료는 원산지 입증서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원산지를 '미상' 또는 '비원산지'로 기재

나. 한-중 FTA 원산지 기준

1) 품목별 원산지기준

참기름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모든 원재료가 최초 원재료부터 한국산이어야 한다는 완전생산기준임.

<예>

- ① 참기름 : 한국에서 재배·수확한 참깨로부터 획득되어야 함.
- ② 유리병 : 한국에서 채취한 규사로부터 유리 원료 및 유리병을 생산하여야 함.

2) 소매용 포장 · 용기 규정

가) 전제조건

HS 규정에 따라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소매용 포장 재료 및 용기이어야 함.

〈예〉

참기름(제1515호)과 함께 제시된 유리병(제7010호)은 참기름과 함께 제1515호에 분류

나) 참기름의 품목별 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소매용 포장 재료 및 용기는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즉, FTA용 BOM에서 플라스틱병 · 라벨 삭제하고 참깨만 기입.

다) 참기름의 품목별 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소매용 포장 재료 및 용기는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여야 함. 즉, FTA용 BOM에서 참깨 뿐 아니라, 플라스틱병 · 라벨도 기입.

※ 품목별 기준이 완전생산기준인 경우에는 소매용 포장 · 용기에 대한 처리 규정이 한-중 FTA 협정문에 없음.

다. 한-중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플라스틱 병 등 소매용 포장도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 원재료이어야 한다면 플라스틱 병이 일본산이며 라벨에 대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BOM 상으로는 한-중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함. 이 경우 플라스틱 병 공급 업체를 한국업체로 변경한 후 플라스틱 병과 라벨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야만 한-중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

플라스틱 병 등 소매용 포장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 원재료가 아니어도 된다면, 현재 BOM 상으로는 한-중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

3. 완전생산기준 판정시 소매용 포장·용기의 고려 여부

관세청 민원 질의 및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질의 1]에 대하여
 -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기준을 구분하여 미소기준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허용기준 내에서 비원산지재료(HS 1302.19호)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한-아세안 FTA의 경우는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미소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사례의 경우 세번변경기준과 함께 제시된 단서조항은 세번변경기준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개별조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건부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과는 별도로 단서조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시된 단서조항의 원산지기준이 대부분 완전생산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미소기준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 해당상품 생산에 사용된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가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나목'에 따라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동 재료는 상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즉, 참깨만 한국에서 재배·수확하면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임.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사업 진행시 실제로 FTA 컨설턴트가 관세청에 민원 질의하여 받은 관세청 유권해석임.

4. 한-중 FTA 조제식료품 중 상기 사례 확대 적용 가능 물품

한-중 FTA 조제식료품 중 품목별 기준이 '완전생산기준'인 경우 동 유권해석을 확대 적용 가능하며 그러한 물품은 아래와 같음.

HS	품명
제15류	동물성이나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 동물성이나 식물성 납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동 내용은 한-중 FTA뿐만 아니라, 다른 FTA에도 확대 적용 가능함.

Key Point

수출물품이 완전생산기준인 경우, 동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모든 원재료는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동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소매용 포장 용기·라벨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도 됨.

05 “최소기준은 무조건 활용할수 있다? vs 없다?”

FTA 협정에 따라 최소기준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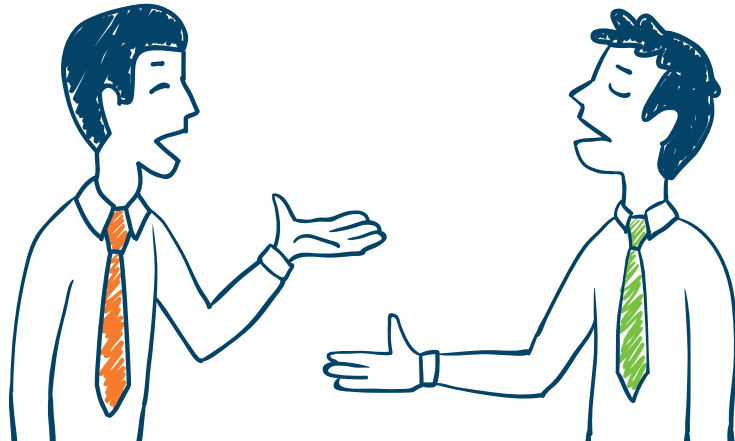
유형 FTA 협정별로 상이한 최소
기준 적용 조건

품목 소스




소스를 미국으로 수출시 원산지
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네요.
소스와 HS 앞 4단위가 같은 중국산
시즈닝이 소스 가격 대비 5%로
소량 사용된 경우 최소기준을
활용할 수 있지요?

아니요.
완제품의 HS CODE 6단위와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 6단위가
달라야만 한-미 FTA 최소기준을
활용할 수 있어요.



1. 물품 설명 및 HS

물품	소스	
설명	간장, 물엿, 백설탕, 마늘 등으로 제조한 소스 (각종 튀김요리에 찍거나 발라서 식용하는 용도)	
HS	2103.90.9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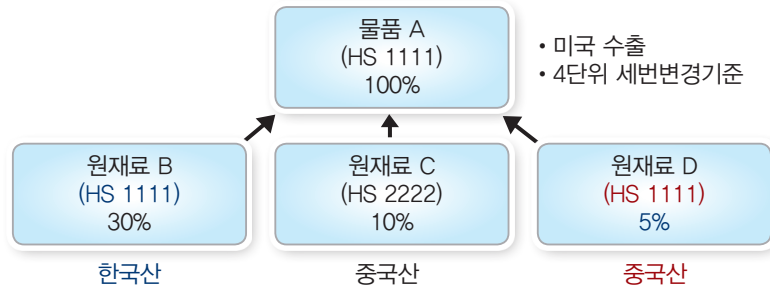
2. 최소기준

가. 개념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당해 물품의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할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규정임.

나. 적용 예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당해 물품의 HS 앞 4단위와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4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



위 사례의 경우 원재료 B는 원산지 재료이므로 완제품의 HS 앞 4단위와 동일하더라도 상관 없으나, 원재료 D는 비원산지 재료이며 완제품의 HS 앞 4단위와 같으므로 기본적으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 함.

이 때 원재료 D가 물품 A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는 경우에 최소기준을 활용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함.

다. 유의사항

FTA별로 농식품에 대한 최소기준 적용 조건이 상이함에 주의하여야 함.

3. 소스에 대한 한-미 FTA 검토

가. FTA용 BOM

A사는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지 않았으며, FTA용 BOM은 다음과 같음.

소요부품(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 품명 : 소스
- HS CODE : 2103.90
- 협정 : 한-미 FTA
- 업체명 : A사
- 담당 : 홍길동
- FOB 가격 : 10,000원

No.	원재료명	HS	원산지	비율(배합비×단가)	구매처
1	간장	2103.10	미상	31.92%(600원)	B사
2	물엿	1702.90	미상	31.81%	C사
3	백설탕	1701.99	미상	19.02%	D사
4	마늘	0703.20	미상	8.85%	E사
5	생강	0910.11	미상	3.93%	F사
6	시즈닝 ²⁶⁾	2103.90	미상	2.43%(500원)	G사
7	변성전분	3505.10	미상	0.46%	H사
8	카라멜색소	3203.00	미상	0.45%	I사
9	L-글루타민산나트륨	2922.42	미상	0.22%	J사

※ 원재료 구매처로부터 원산지 입증서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원재료의 원산지를 '미상' 또는 '비원산지'로 기재

나. 한-미 FTA 원산지 기준

1) 품목별 원산지기준

비원산지 재료의 HS 앞 4단위가 수출물품의 HS 앞 4단위와 모두 다른 경우 품목 별 기준을 충족한다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임.

26) 시즈닝(seasoning) : 향신료와 허브 등을 첨가하여 향과 맛을 증가하도록 양념하는 것.

2) 농식품에 대한 한-미 FTA 최소기준

농식품에 대하여 한-미 FTA 최소기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비원산지 재료의 HS 앞 6단위와 물품의 HS 앞 6단위가 달라야 함.

<예>

물품 HS 1111.11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비원산지 재료 HS 1111.11, 물품 HS 1111.22인 경우에는 최소기준 적용 검토 가능함.
- 비원산지 재료 HS 1111.11, 물품 HS 1111.11인 경우에는 최소기준 적용 불가능함.

- ②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물품의 FOB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하이어야 함.

FTA	조건			
	CTSH ²⁷⁾	물품가격	비율	적용 제외
한-미	0	FOB	10% 이하	(예외) 부속서 6-나.

- ③ 부속서 6-나. '제6.6조(최소기준)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다.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1) 4단위 세번변경기준 검토

비원산지 재료인 간장과 시즈닝의 HS 4단위가 완제품인 소스의 HS 4단위와 동일하므로, 현재 BOM상으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 함.

2) 최소 기준 검토

- ① 간장(HS 2103.10)의 경우에는 완제품인 소스(HS 2103.90)의 HS CODE 6단위와 다르므로, 최소기준을 검토할 필요 있음.

간장의 가격(600원)이 소스의 FOB 금액(10,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이므로 최소기준 적용 가능.

27) CTS(Change of Tariff Sub-Heading, 6단위 세번변경기준) : 당해 물품의 HS 앞 6단위와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

② 시즈닝(HS 2103.90)의 경우에는 완제품인 소스(HS 2103.90)와 HS 6단위가 같으므로, 최소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4. 원재료 원산지 관리 전략 및 한-미 FTA 원산지 충족 재검토

가. 원재료의 원산지 관리 전략

5. 자유무역 협정명칭	6. 품목 번호	7. 품명 규격	9. 원산지 결정기준	10.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11. 원산지
				충족 (Y)	미충족(N)	
한-미 FTA	2103.90	시즈닝	CTH	[√]	[]	KR

간장에 대하여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할 필요 없으나, 시즈닝 공급업체로부터 시즈닝에 대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는 과정을 거침.

나. 한-미 FTA 원산지 충족 재검토

1) 재조정된 FTA용 BOM

시즈닝에 대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은 경우 FTA용 BOM은 다음과 같음.

소요부품(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 품명 : 소스
- HS CODE : 2103.90
- 협정 : 한-미 FTA
- 업체명 : A사
- 담당 : 홍길동
- FOB 가격 : 10,000원

No.	원재료명	HS	원산지	비율	구매처
1	간장	2103.10	미상	31.92% (600원)	B사
2	물엿	1702.90	미상	31.81%	C사
3	백설탕	1701.99	미상	19.02%	D사
4	마늘	0703.20	미상	8.85%	E사

No.	원재료명	HS	원산지	비율	구매처
5	생강	0910.11	미상	3.93%	F사
6	시즈닝	2103.90	KR	2.43% (500원)	G사
7	변성전분	3505.10	미상	0.46%	H사
8	카라멜색소	3203.00	미상	0.45%	I사
9	L-글루타민산나트륨	2922.42	미상	0.22%	J사

※ 시즈닝의 경우 시즈닝 구매처로부터 원산지 입증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원산지를 'KR' 또는 '한국'으로, 나머지 원재료는 원산지 입증서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원산지를 '미상' 또는 '비원산지'로 기재

2)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재검토

간장에 대하여는 최소기준을 활용하고, 시즈닝에 대하여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 원산지 재료로 만들어 소스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

5. 농식품에 대한 주요 FTA 협정별 최소기준 정리

농식품에 대하여 FTA별로 최소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서로 다르며, 주요 FTA 협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한-아세안 · 한-베트남 FTA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물품의 FOB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하이면 최소기준을 활용할 수 있음.
- ② 한-EU FTA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물품의 EXW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하이면 최소기준을 활용할 수 있음.
- ③ 한-중 FTA의 경우 제15류부터 제24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비원산지 재료의 HS 앞 6단위와 물품의 HS 앞 6단위가 달라야 한다는 조건 하에,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물품의 FOB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하이면 최소기준을 활용할 수 있음.

FTA	조건			
	CTSH	물품가격	비율	적용 제외
한-아세안 한-베트남	X	FOB	10% 이하	-
한-EU	X	EXW	10% 이하	-
한-중	O(15류~24류)	FOB	10% 이하	-



Key Point

FTA 협정에 따라서는 완제품의 HS CODE 6단위와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 6단위가 달라야만 최소기준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FTA가 있음에 주의

06 “BOM에 넣을까? 빼일까? 고민될 때는 이렇게!!”

소매용 포장·용기를 제외한, 실제 물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바탕으로 BOM을 작성해야

유형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BOM 작성 요령

품목 간장




간장에 대한 품목제조보고서 상 원재료명이 주 원재료인 탈지대두 100%라고 되어 있으니, 중국 수출시 FTA용 BOM에는 탈지대두만 기재하면 되겠죠?

FTA용 BOM은 실제 간장을 만드는 데 투입된 모든 원재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해요. 다만, 간장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는 소매용 포장·용기는 제외해도 돼요.



1. 물품 설명 및 HS

물품	간장	
설명	탈지대두, 가성소다, 소다회, 염산, 정수, 정제 소금으로 만든 간장	
HS	2103.10.0000	

2. 간장에 대한 한-중 FTA 검토

가. 최초 작성한 FTA용 BOM

소요부품(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 품명 : 간장
- HS CODE : 2103.10
- 업체명 : A사
- 담당 : 홍길동

No.	원재료명	HS	원산지	비율	구매처
1	탈지대두	2304.00	미상	100%	B사

※ 원재료 구매처로부터 원산지 입증서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원재료의 원산지를 '미상' 또는 '비원산지'로 기재

품목제조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FTA용 BOM이며, 실제 투입된 원재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BOM이 아니므로, 틀린 BOM임.

나. FTA 컨설팅을 통해 수정한 FTA용 BOM

소요부품(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 품명 : 간장
- HS CODE : 2103.10
- 업체명 : A사
- 담당 : 홍길동

No.	원재료명	HS	원산지	비율	구매처
1	탈지대두	2304.00	미상	20%	B사
2	가성소다	2815.11	미상	5%	C사
3	소다회	2836.20	미상	4%	D사
4	염산	2806.10	미상	20%	E사
5	정수	2201.90	미상	50%	F사
6	정제소금	2501.00	미상	1%	G사

※ 원재료 구매처로부터 원산지 입증서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원재료의 원산지를 '미상' 또는 '비원산지'로 기재

실제 투입된 원재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BOM이므로 적절한 BOM임.

다. 한-중 FTA 원산지 기준

1) 품목별 원산지 기준

비원산지 재료의 HS 앞 4단위가 수출물품의 HS 앞 4단위와 모두 다른 경우 품목별 기준을 충족한다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임.

2) 소매용 포장·용기 규정

① 적용 조건

간장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는 경우와 같이 내용물과 소매용 포장·용기가 함께 제시되고 HS 규정에 따라 내용물 해당 호에 분류되는 경우에 적용

② 내용물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내용물의 구성 원재료만 FTA용 BOM에 기입하고, 소매용 포장·용기는 기입하지 않음.

③ 내용물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내용물의 구성 원재료뿐만 아니라 소매용 포장·용기도 FTA용 BOM에 기입하여야 함.

라. 한-중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4단위가 수출물품의 HS 앞 4단위와 모두 다르므로, 한-중 FTA 품목별 기준을 충족함.

3. 올바른 FTA용 BOM 작성

가. 실제 투입된 원재료를 바탕으로 BOM을 작성하여야 하는 이유

1) BOM의 정합성 확보

FTA 원산지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재료 구매부터 제품 생산 및 수출 과정을 기초로 하여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실제 투입된 원재료를 바탕으로 FTA용 BOM을 구성하여야 함.

2)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의 정확성 확보

원산지 검증시 FTA용 BOM에서 실제 투입된 원재료의 누락이 확인되고, 누락된 원재료가 물품의 HS CODE와 동일한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실제 투입된 원재료를 바탕으로 FTA용 BOM을 구성하여야 함.

나. FTA 원산지 심사(검증) 매뉴얼

기획재정부 FTA 원산지 심사(검증) 매뉴얼 내용 중 BOM 관련 내용을 소개함.

- 최종제품을 구성하는 BOM (bill of material)과 제조(생산)공정도를 요구하여 제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실재성을 확보하여야 함.
 - 생산자의 BOM을 기초로 품명, 규격, 소요량 등을 확인하여 생산자가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원재료 종류 혹은 가격의 누락 여부 점검

〈예〉

수입 혹은 원산지확인서 미수령하여 역외산인 원재료 누락, 미소기준을 충족 시키기 위해 원재료 구매가격 조작 등

- 공급자망(supply chain)의 완전성 검토
 - 수출자 혹은 생산자의 구매 전산 DB에 등록된 모든 공급자 (협력사, 사급²⁸⁾자 등) 명단을 요청 및 검토하여 완전성의 기준으로 활용함
 - 당기의 해당 물품이 속한 사업부 (혹은 전사)의 재무회계상 결산단위별 · 공급자별 구매원장(재무팀 혹은 회계부서에 요청)을 요청 및 검토하여 완전성의 기준으로 활용함

다. 원산지 검증 사례



1) 사건 개요

미국 세관에서 원산지 증명서 사본, 원재료 목록, 가격정보 및 제조와 관련된 자료 등을 요청함.

28) 사급 : 물품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모든 원료나 자재를 물품 제조를 맡기는 쪽에서 사서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공급업체를 지정해 주는 경우를 말함.

2) 검증 결과

제출된 자료의 불일치, 원재료 명세서의 부정확성 등에 의해 해당 물품이 한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어 FTA 특혜관세를 취소하고 수입자에게 해당 관세 등을 추징함.

3) 검증 실패 이유

정보제공요청서(Form 28)를 받은 후 30일 내에 회신하여야 하지만, 수입자 및 운송인 등이 해당 문서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이해하지 못하여 늦게 수출자에게 정보 요청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수출자는 대응하는데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였으며, 생산 시점에 정확한 생산정보 및 자재명세를 갖추지 않아 적기에 대응하지 못 함.



Key Point

세번변경기준 적용시에는 소매용 포장·용기를 제외한, 실제 물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바탕으로 FTA용 BOM을 구성한 후, 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07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BOM 작성에 주의하세요.”

실제 물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뿐만 아니라, 소매용 포장용기도 포함하여 BOM을 작성해야

유형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BOM 작성 요령

품목 음료




알로에 음료를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데, 내용물에 대한 원재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면 되겠죠?



음료에 대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 기준은 부가가치기준이며, 내용물의 구성 원재료뿐만 아니라 소매용 포장·용기도 포함하여 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해야 해요.



1. 물품 설명 및 HS

물품	음료	
설명	알로에베라 겔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첨가제를 첨가한 음료	
HS	2202.99.9000	

2. 음료에 대한 한-아세안 FTA 검토

가. FTA용 BOM

A사는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지 않았으며, FTA용 BOM은 다음과 같음.

소요부품(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 품명 : 음료 500ML
- HS CODE : 2202.99
- 협정 : 한-아세안 FTA
- 업체명 : A사
- 담당 : 홍길동
- FOB 가격 : 500원

No	원재료명	HS	원산지	수량	단가	가격	구매처
1	알로에베라겔	2008.99	미상	0.030	1,500	45	B사
2	액상과당	1702.90	미상	0.030	700	21	C사
3	무수구연산	2918.14	미상	0.004	1,000	4	D사
4	젯산칼슘	2918.11	미상	0.004	3,000	12	E사
5	젤란검	3913.90	미상	0.001	40,000	40	F사
6	딸기향	3302.10	미상	0.001	20,000	20	G사
7	정제수	2201.90	미상	0.430	2	1	H사
8	BOX	4819.10	미상	0.050	200	10	I사
9	CAP	3923.50	미상	1.000	20	20	J사
10	PET병	3923.30	미상	1.000	150	150	K사
원산지 재료비의 합계						0	
비원산지 재료비의 합계						323	
합계						323	

※ 원재료 구매처로부터 원산지 입증서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원재료의 원산지를 '미상' 또는 '비원산지'로 기재

나. 한-아세안 FTA 원산지 기준

1) 품목별 원산지 기준

음료(HS 2202.90)에 대한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공제법(BD) 40% 이상

당해 물품 FOB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비를 공제한 금액을 당해 물품 조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함.

$$\text{공제법} = \frac{\text{물품의 조정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text{물품의 조정가격(FOB)}} \times 100$$

② 원재료 중 인삼(HS 1211.20) 및 아편·감초·흡·마황을 제외한 식물성 수액²⁹⁾과 추출물³⁰⁾(HS 1302.19)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2) 부가가치기준에 대한 소매용 포장·용기에 대한 규정

HS 통칙 5. 규정에 따라 내용물(간장)이 소매용 포장·용기(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는 경우로 내용물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는 내용물의 구성 원재료뿐만 아니라 소매용 포장·용기도 FTA용 BOM에 기입하여야 함.

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1) 소매용 포장·용기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음료의 FOB 가격(500원)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143원)을 공제한 금액을 음료의 FOB 가격(500원)으로 나눈 비율이 71.40%이며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가 없으므로, 한-아세안 FTA 품목별 기준 충족이라고 잘못 판단함.

2) 소매용 포장·용기를 포함한 경우

HS 1211.20 및 HS 1302.19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는 없으나, 음료의 FOB 가격(500원)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323원)을 공제한 금액을 음료의 FOB 가격(500원)으로 나눈 비율이 35.40%이므로, 한-아세안 FTA 품목별 기준 불충족이라고 정확히 판단함.

29) 식물성 수액(Vegetable saps) : 식물의 뿌리에서 줄기를 지나 잎으로 향하는 액체. 예)고로쇠 수액

30) 식물성 추출물(Vegetable extracts) : 식물의 좋은 맛(수용성) 성분이나 그것들을 용제에 의하여 추출하여 농축한 것. 예)인삼 농축액

3. 원재료 원산지 관리 전략 및 한-미 FTA 원산지 충족 재검토

가. 원재료의 원산지 관리 전략

5. 자유무역 협정명칭	6. 품목 번호	7. 품명 규격	9. 원산지 결정기준	10.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11. 원산지
				충족 (Y)	미충족(N)	
한-아세안 FTA	3923.30	PET 병	CTH	[√]	[]	KR

PET 병 공급업체로부터 PET 병에 대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인 4단위 세번번 경기준 또는 공제법 40% 이상을 충족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는 과정을 거침.

나. 한-아세안 FTA 원산지 충족 재검토

1) 재조정된 FTA용 BOM

PET 병에 대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은 경우 FTA용 BOM은 다음과 같음.
 소요부품(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 품명 : 음료 500ML
- HS CODE : 2202.90
- 협정 : 한-아세안 FTA
- 업체명 : A사
- 담당 : 홍길동
- FOB 가격 : 500원

No	원재료명	HS	원산지	수량	단가	가격	구매처
1	알로에베라겔	2008.99	미상	0.030	1,500	45	B사
2	액상과당	1702.90	미상	0.030	700	21	C사
3	무수구연산	2918.14	미상	0.004	1,000	4	D사
4	젯산칼슘	2918.11	미상	0.004	3,000	12	E사
5	젤란검	3913.90	미상	0.001	40,000	40	F사
6	딸기향	3302.10	미상	0.001	20,000	20	G사
7	정제수	2201.90	미상	0.430	2	1	H사
8	BOX	4819.1	미상	0.050	200	10	I사
9	CAP	3923.5	미상	1.000	20	20	J사

No	원재료명	HS	원산지	수량	단가	가격	구매처
10	PET병	3923.3	KR	1,000	150	150	K사
역내산(원산지) 재료 가치의 합계						150	
비역내산(비원산지) 재료 가치의 합계						173	
합계						323	

※ PET 병 구매처로부터 원산지 입증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원산지를 'KR' 또는 '한국'으로, 나머지 원재료는 원산지 입증서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원산지를 '미상' 또는 '비원산지'로 기재

2) 한-아세안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재검토

음료의 FOB 가격(500원)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173원)을 공제한 금액을 음료의 FOB 가격(500원)으로 나눈 비율이 65.40%이며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가 없으므로, 한-아세안 FTA 품목별 기준 충족.



Key Point

부가가치기준 적용시에는 실제 물품 생산에 투입된 내용물의 구성 원재료뿐만 아니라, 소매용 포장·용기도 포함하여 FTA용 BOM을 구성한 후,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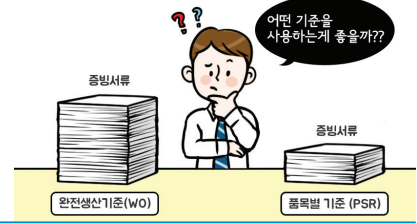
※ 대부분의 다른 FTA도 소매용 포장·용기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한-캐나다 FTA의 경우에만 부가가치기준 적용시에도 소매용 포장·용기를 제외한, 실제 물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바탕으로 FTA용 BOM을 구성한 후,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08 “원산지증명서 작성할 때 한번 더 고민하세요”

완전생산기준이 ‘WO’,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PSR’이면, 원산지 입증에 쉬운 원산지 기준인 PSR로 기재해야

유형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상 원산지 기준 기재 요령

품목 곡물 조제품




수입자가 곡물 조제품(HS 1904.10)에 대하여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상에 원산지 기준을 ‘WO’라고 작성해 달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WO(완전생산기준)’도 가능하고 ‘PSR(품목별 기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산지 검증시 입증자료를 제출하기에는 ‘PSR’이 더 쉬우므로, 수입자와 상의하여 ‘PSR’로 발급하는 것이 더 좋아요.



1. 물품 설명 및 HS

물품	곡물 조제품	
설명	보리쌀, 현미, 멥쌀, 겉보리, 흑미 등을 원재료로 하여, 이를 세척, 증기로 찜, 건조, 볶음, 배합, 분쇄 공정을 통해 제조한 곡물 조제품	
HS	1904.10.9000	

2. 곡물 조제품에 대한 한-미 FTA 검토

가. FTA용 BOM

A사는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지 않았으며, FTA용 BOM은 다음과 같음.

소요부품(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 품명 : 곡물 조제품
- HS CODE : 1904.10
- 협정 : 한-미 FTA
- 업체명 : A사
- 담당 : 홍길동

No.	원재료명	HS	원산지	비율	구매처
1	보리쌀	1104.29	미상	25%	B사
2	현미	1006.20	미상	15%	C사
3	멥쌀	1006.30	미상	10%	D사
4	겉보리	1104.29	미상	10%	E사
5	흑미	1006.30	미상	10%	F사
6	찹쌀	1006.30	미상	10%	G사
7	옥수수	1005.90	미상	5%	H사
8	서리태	1201.90	미상	5%	I사
9	대두	1201.90	미상	5%	J사
10	약콩	1201.90	미상	5%	K사

※ 원재료 구매처로부터 원산지 입증서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원재료의 원산지를 '미상' 또는 '비원산지'로 기재

나. 한-미 FTA 원산지 기준

1)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은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모든 원재료가 최초 원재료부터 한국산이어야 한다는 규정임.

<예>

- ① 보리쌀 : 한국에서 재배·수확한 보리를 찌서 겨를 벗기는 과정을 통해 획득되어야 함.
- ② 현미 : 한국에서 재배·수확한 벼를 건조·탈곡 후 왕겨를 벗기는 과정을 통해 획득되어야 함.
- ③ 혼합곡물 조제품 : 사용된 모든 곡물들이 한국에서 재배·수확되어야 함.

2) 품목별 원산지 기준

비원산지 재료의 HS 앞 2단위가 수출물품의 HS 앞 2단위와 모두 다른 경우 품목별 기준을 충족한다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임.

다.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1) 완전생산기준 검토

실제로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한국에서 재배·수확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BOM에서는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입증서류를 받지 않았으므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지 못 함.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모든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가 'WO'로 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또한 모든 원재료 공급업체가 재배·수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함.

2) 품목별 원산지 기준 검토

현재 BOM 상태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HS 앞 2단위가 수출물품의 HS 앞 2단위와 모두 다르므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한-미 FTA 품목별 기준을 충족함.

3.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방법

가. 발급주체

수출자, 제조자, 수입자.

※ 수입자가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는 있으나, 원산지 검증시 FTA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나. 한-미 FTA 협정문 상 원산지 증명 기재사항

- ① 필요한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
-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⑦ 증명일, 그리고
- ⑧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

다. 국내 법령 권고 양식

한-미 FTA 협정문에는 원산지 증명서에 대하여 별도의 정형화된 서식은 없으나, 국내법령에 표준 권고 양식 있음.

동 양식의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란에 완전생산기준인 경우에는 'WO', 품목별 원산지 기준인 경우에는 'PSR'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므로, 동 사례의 경우 원산지 검증시 FTA 입증자료 제출을 고려하여 'WO'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한 'PSR'로 발급하는 것이 더 좋음.

※ 권고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접속하여 통합검색 란에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서식 및 작성요령 확인 가능.



Key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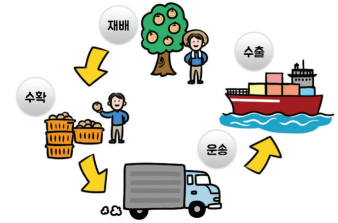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원산지 증명서 기재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하는 란에는 나중에 원산지를 입증하기 쉬운 원산지 기준을 기재하는 것이 좋음.

09 “우리 과수원에서 재배한 배,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재배 → 수확 → 보관 → 운송 → 수출’ 전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특히 재배·수확 기록!!

유형 안전생산기준 입증서류

품목 배




한국에서 재배·수확한 배(pears)를 미국으로 수출하니까 당연히 한국산이지. FTA 할 때 아무 자료도 필요 없겠조?

배를 재배·수확하는 과정부터 수출까지의 전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해요.



1. 물품 설명 및 HS

물품	배	
설명	농업협동조합에 소속된 농가에서 재배·수확한 배	
HS	0808.30.0000	

2. 배에 대한 한-미 FTA 협정문 상 원산지 기준

가. 완전생산기준

한국에서 자란 배나무에서 배를 재배하는 과정부터 수확하여, 수출하는 과정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기준임.

나. 품목별 원산지 기준

비원산지 재료의 HS 앞 2단위와 완제품의 HS 앞 2단위가 다른 경우에 원산지가 충족된다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임.

즉, 배나무(HS 0602.20)는 비원산지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배(HS 0808.30)를 재배·수확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함.

3. 완전생산기준 관련 국내 규정

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 2]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에서 농산물 검증시 요구되는 자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사항
① 수출자 = 생산자 • 실제 생산자·농장의 증빙자료 [예시 : 경작지 등록자료, 조합원 확인서류 등] • 생산능력 확인 자료 [예시 : 연간 생산량,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 실제 생산자 여부 확인 • 생산 농장 현황 확인 • 생산 사실 확인
② 수출자 ≠ 생산자 • 생산지에서 집하지까지의 운송 증빙 자료, 거래 증빙 자료	• 생산지와 집하지간 운송사실 확인 • 생산자와 수출자간 거래사실 확인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사항
③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이 존재하는 경우 • 역내산과 역외산 물품의 물리적 구분 증빙자료 또는 회계적 재고관리 증빙자료	• 집하지에서 역내산과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이 혼재되는 경우 구분 여부 확인
• 생산 공정 설명자료 [예시 : 생산 공정도 등]	• 생산 공정 확인

나. 서류보관 가이드라인

관세청 FTA 홈페이지 상의 원산지 검증 관련 서류보관 가이드라인에서는 완전생산 기준인 경우 필수 증빙자료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언급하고 있음.

- 당해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
(사전심사,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 당해물품의 재배, 채취, 어로 등 생산, 제조 공정 설명서 및 관련 기록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
(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증³¹⁾, 송품장 등)

다.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이 어려워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수축산 농가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포괄)확인서와 효력이 동일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운영하고 있음.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별표 1.에서 배(pears)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연번	서류명	품목명	영문명	HS
30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배	pears	0808.30
224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배	pears	0808.30
305	지리적 표시 등록증	배	Pears	0808.30
419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배	pears	0808.30

31) 기납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 공급물품에 포함된 기초 원재료 수입시 납부세액과 동 물품의 공급사실을 세관장이 증명하는 서류

즉, 배(pears)에 대하여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지리적 표시 등록증,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중 하나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원산지(포괄) 확인서로 인정함.

4. 완전생산기준 관련 검증 사례(조세심판원 사례)

가. 검증 개요

- FTA 협정명 : 한-미 FTA
- 수출국가 : 미국
- 품명 : 과실류
- PSR : 완전생산기준

나. 제출자료

농장 등록서류, 농장 촬영 사진, 수출자 매출장부, 검역증 등

다. 검증 결과

재배·수확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미기재, 구체적인 생산자 정보 미제출, 현지 조사 시 수출자가 생산자 농장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도 구입하는데 구분 관리 미비로 인해 FTA 혜택이 배제됨.

5. 신선 배에 대한 원산지 관리

가. 거래 관계도



나. 농가

- 1) 실제 생산자 여부 및 생산농가 현황 확인
 - 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상의 농가명, 농가번호, 전화번호, 재배면적, 수목수, 주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②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및 별첨 생산자별 재배내역 상의 생산자명, 생산 품목명, 주소, 면적, 계획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③ 농지원부

농지원부 상의 농업인명, 주소, 농지경작현황, 소유농지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2) 재배·수확 사실 확인

① 영농일지

영농일지는 작물 재배 작업 현황을 일자별로 기록하는 문서를 말하며, 농가가 재배·수확한 기록이라 볼 수 있음.

꼭, 영농일지가 아니더라도 핸드폰 일정표 등에 재배·수확 기록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수확일자 및 수확량을 농가에서 빠짐없이 작성하고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여 FTA 원산지 검증시 제출하여야 함.

② 원산지(포괄)확인서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지리적 표시 등록증,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가 있는 농가의 경우에는 별도의 원산지(포괄)확인서를 A농협에 발급할 필요가 없음.

※ GAP 등을 받지 않은 신규 농가는 A농협에 납품한 배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다. A 농협

1) 구매 내역 확인

① 배 인수시 확인 서류

입·출고증 또는 일일 배 입고현황 등 A 농협이 농가로부터 배(pears)를 인수할 때 사용하는 서류를 말함.

※ 동 서류에 수확일 및 농가 서명 란을 추가하여 농가가 수확일을 기재하여 직접 서명하여 A농협에 제공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② 수량 확인 서류

거래명세표 또는 농협 작업일지 등을 통해 농가와 수량 확인한 서류를 통해 수량 확인.

③ 농가와 수매대금 정산 서류

미국수출 수매대금 정산서 또는 매입내역 조회 등 농가와 A 농협과 배에 대한 대금 정산을 하는 서류를 통해 확인.

2) 선과·포장 내역 확인

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재배지 검역, 선과장 및 저장시설 확인, 농가별 선과계획서 제출, 선과, 검역,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의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완전생산기준 관련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참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배는 '대미 배 수출 워크플랜(농림축산검역본부)Korea - Sand Pear Work Plan 2014'과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9-35호 한국산 감귤,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 파프리카 생과실 및 분재류의 수출검역 요령 중 제3장 배 생과실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검역을 관리함.

② 배 포장상자

미국으로 수출하는 배의 경우에는 배 포장 상자에 'Preclearance Program, Packinghouse Number(선과장 번호), Grower Number(농가 번호), Code or Date of Packing(농가코드 또는 포장일자)가 기재됨.

3) 출고내역 확인

① 배 출고시 수량 확인 서류

출고 대장 또는 매출내역 조회 등을 통해 A농협에서 출고한 수량 확인.

② 수출자와의 대금 정산 서류

미국수출 수매대금 정산서 또는 매출대금 조회 등 A농협과 수출자 간의 배에 대한 대금 정산을 하는 서류를 통해 확인.

③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출자가 요청하는 경우 A농협이 수출자에게 발급하며, 동 원산지(포괄)확인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



Key Point

- 농산물도 일반 상품처럼 재배 → 수확 → 보관 → 운송 → 수출 등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보관 필요.
- 영농일지에 수확일자 및 수확량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있어야 함.
- GAP 등을 받지 않은 신규 농가는 A농협에 납품한 배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농협이 농가로부터 배를 인수하는 서류에 수확일 및 농가 서명란을 추가하여 농가가 수확일을 기재하고 직접 서명하여 농협에 제공하도록 관리할 필요 있음.
- 수출 수량에 대하여 농가에서 인도받아 수출자에게 제공하였다는 농협 구매내역, 선과·포장 내역, 출고내역 등을 보관하여야 함.
- 수출자가 요청하는 경우 A농협이 수출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보관하여야 함.
- 이러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에 주의.

10

“한국산 홍삼, 한국산임을 어떻게 입증하죠?”

인삼경작신고서 · 인삼경작확인서 · 수삼연근확인서 등
홍삼 재배 · 수확 기록이 있어야

유형 완전생산기준 입증서류

품목 홍삼




한국에서 재배 · 수확한 수삼에 대한
FTA 입증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삼경작신고서 · 인삼경작
확인서 · 수삼연근확인서가 수삼을
재배 · 수확했다는 대표적인 FTA
입증서류예요. 그 외에도 수삼 재배 ·
수확하는 과정부터 수출까지의 전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해요.



1. 물품 설명 및 HS

물품	홍삼	
설명	홍삼협동조합에 소속된 농가에서 수삼 재배·수확 후 가공한 홍삼	
HS	1211.20.1391	

2. 수삼·홍삼차에 대한 한-아세안 FTA 협정문 상 원산지 기준

가. 완전생산기준

한국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수삼을 한국 내에서 씻기·찌기·건조하는 공정을 거친 경우에 한-아세안 FTA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함.

나. 수삼에 대한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

수삼에 대한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도 완전생산기준으로 되어 있음.

다. 홍삼차에 대한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

홍삼차(HS 2106.90)에 대한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① 당해 물품 FOB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비를 공제한 금액을 당해 물품 조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함.

$$\text{공제법} = \frac{\text{물품의 조정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text{물품의 조정가격(FOB)}} \times 100$$

- ② 원재료 중 인삼(제1211.20호) 및 아편·감초·흡·마황을 제외한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제1302.19호)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그러므로, 홍삼차 제조업체는 홍삼 제조업체로부터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야 함.

3. 완전생산기준 관련 국내 규정 및 검증사례

기본적인 내용은 ‘배’ 내용과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 확인서 고시 부분만 언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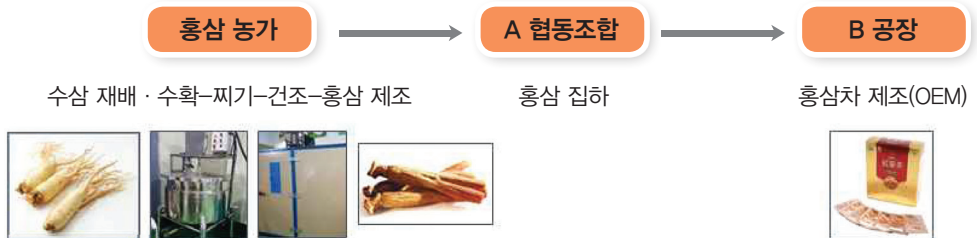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별표 1.에서 인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연번	서류명	품목명	영문명
59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인삼	Ginseng roots
60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인삼류 기타	Ginseng roots, other
94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묘삼	Ginseng Seedlings
266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인삼	Ginseng roots
267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인삼류 기타	Ginseng roots, other
308	지리적표시 등록증	백삼	White ginseng
315	지리적표시 등록증	수삼	Raw ginseng
328	지리적표시 등록증	태극삼	Taekuk Ginseng
333	지리적표시 등록증	홍삼	Red ginseng
456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산양삼	wood-cultivated ginseng
531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인삼	Ginseng roots
694	친환경농산물인증서	기타 인삼	Ginseng Roots, Other

즉, 인삼에 대하여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지리적 표시 등록증,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중 하나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함.

4. 홍삼에 대한 원산지 관리

가. 거래 관계도



나. 농가

1) 실제 생산자 여부 및 생산농가 현황 확인

①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상의 농가명, 농가 주소, 농지 및 농산물 생산(농지소재지, 농지면적, 재배품목 포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② 농지원부

농지원부 상의 농업인명, 주소, 농지경작현황, 소유농지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2) 재배 · 수확 사실 확인

① 인삼경작신고서 및 인삼경작확인서

인삼경작신고서에는 경작인 성명, 주소, 경작지 주소, 전년도 6월부터 당해연도 5월까지의 식재³²⁾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음.

인삼경작확인서는 인삼경작신고서 내용에 대하여 조합장 등이 확인하고 경작인, 경작지 주소, 식재면적, 전년도 6월부터 당해 연도 5월까지의 식재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발급한 서류임.

그러므로, 인삼경작신고서 및 인삼경작확인서는 수삼 재배에 대한 확인 서류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② 수삼연근확인신청서 및 수삼연근확인서

수삼연근확인신청서에는 수확예정일, 경작지 내역(주소, 지목, 지적), 식재년도, 경작면적, 수확예정(면적, 월일)이 기재되어 있음.

수삼연근확인서는 수삼연근확인신청서 내용에 대하여 조합장 등이 확인하고 검사

32) 식재 : 식물을 심어 재배함 또는 나무를 심어 가꾸는 일

입회하여 5년근 이상의 수삼 수확 사실 확인 후 경작자 성명, 경작지 주소, 경작 면적, 수확면적, 수확연월일, 수량 등을 기재하여 발급한 서류임.

그러므로, 수삼연근확인서는 수삼 수확에 대한 확인서류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③ 영농일지 등

영농일지나 핸드폰 일정표 등에 재배·수확 기록을 관리하여야 함.

④ 원산지(포괄)확인서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등을 받은 농가의 경우에는 별도의 원산지(포괄)확인서를 A 협동조합에 발급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GAP 등을 받지 않은 농가는 A 협동조합에 납품한 홍삼이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다. A 협동조합

1) 구매 내역 확인

① 홍삼 인수시 확인 서류

생산자 구매확인서 등 농가로부터 A 협동조합이 홍삼을 인수할 때 사용하는 서류를 말함.

※ 동 서류에 인삼 파종일자·수확일자·구매일자·구매수량·생산자(농가)명·구매자명·생산자(농가) 도장 또는 서명을 농가가 직접 작성하여 A 협동조합으로 제공하도록 관리할 필요 있음.

② 농가와 수매대금 정산 서류

수매대금 정산서 또는 매입내역 조회 등 농가와 A 협동조합간의 홍삼에 대한 대금 정산을 하는 서류를 통해 확인

2) 출고내역 확인

① 홍삼차 OEM 제조를 위해 출고시 확인 서류

출고 대장 등을 통해 A 협동조합에서 OEM 제조를 위해 출고한 수량 확인.

② 원산지(포괄)확인서

A 협동조합은 홍삼차 제조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동 원산지(포괄)확인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

Key Point

- 농산물도 일반 상품처럼 재배 → 수확 → 보관 → 운송 → 수출 등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보관 필요.
- 인삼경작신고서 및 인삼경작확인서는 수삼 재배에 대한 확인 서류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수삼연근확인서는 수삼 수확에 대한 확인서류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영농일지에 수확일자 및 그 수확량을 앞으로 빠짐없이 작성하고 있어야 함.
- GAP 등을 받지 않은 신규 농가는 협동조합에 납품한 홍삼이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협동조합이 농가로부터 홍삼을 인수하는 서류에 인삼 파종일자 · 수확일자 · 구매일자 · 구매수량 · 생산자(농가)명 · 구매자명 · 생산자(농가) 도장 또는 서명을 농가가 직접 작성하여 농협으로 제공하도록 관리할 필요 있음.
- 홍삼을 홍삼 제품 제조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출고대장 등을 보관하여야 함.
- 협동조합은 홍삼 제품 제조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며, 동 원산지(포괄)확인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이러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에 주의.

※ 인삼경작신고서 · 인삼경작확인서 · 수삼연근확인서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접속하여 통합검색 란에 서식명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서식 및 작성요령 확인 가능.

11

“우리제품이 다른 국가를 거쳐 수출될 때는 어떻게 하죠?”

FTA 협정에 따라 제3국 경유 조건이 다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유형 완전생산기준 입증서류 및 운송원칙 충족 여부

품목 버섯




한국에서 여러 국가의 항구를 거쳐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데, B/L 상에는 선적국과 도착국만 기재하면 되겠죠?

선적지·경유지·도착지가 모두 명시된 B/L, 선사가 발행한 비조작 증명서 등이 필요해요.



1. 물품 설명 및 HS

물품	버섯	
설명	버섯 농가에서 재배·수확한 팽이버섯	
HS	0709.59.5000	

2. 팽이버섯에 대한 한-아세안 FTA 협정문 상 원산지 기준

가. 완전생산기준

한국에서 팽이버섯을 재배·수확하여 수출한 경우에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함.

나. 팽이버섯에 대한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

팽이버섯에 대한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도 완전생산기준으로 되어 있음.

다. 한-아세안 FTA 운송원칙

1) 제3국 경유시 운송원칙 충족 요건

- ①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상의 이유로 제3국을 경유할 것
- ②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을 것
- ③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 보관을 위해 필요한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2) 제출서류

아래 서류 모두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 ①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³³⁾
- ② 원산지증명서 원본
- ③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분
- ④ 그 밖의 운송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빙서류

3. 인도네시아 직접운송 원칙 관련 관세청 안내

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 안내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원산지증명서 서식 3번(운송수단 및 경로)란에 적재항과 하역항 외에 ‘환적항’도 포함되도록 상세히 기재 요망.

33)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B/L을 말함.(선적지, 도착지, 경유지 기재된 B/L)

3번 란에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7번 DESCRIPTION 란에 기재.

〈예〉

TRANSIT IN SINGAPORE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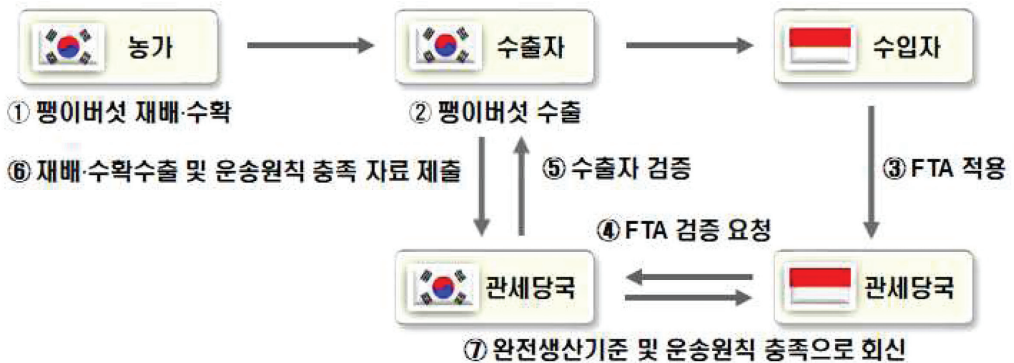
나.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 관련 인도네시아 수출업체 등 안내

제3국 경유 인도네시아 수출시 제출하여야 할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음.

- ① 통과선하증권이라 표기하고, 선적지·경유지·도착지가 모두 명시된 B/L
- ② 제3국의 선사(항공사)가 사전에 발행하고 서명한 비조작 증명서 또는 제3국 세관 발행 비조작 증명서

4. 인도네시아 직접운송원칙 검증 사례

가. 검증 개요



나. 검증 이유

- ①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 3번 란 또는 7번 란에 경유국 미기재.
- ② B/L 제목에 COMBINED TRANSPORT B/L³⁴⁾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B/L 상에 경유국 미기재.

다. 세관 요청 자료

- ① 팥이버섯 재배·수확부터 수출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자료
- ② 한-아세안 FTA 운송원칙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

34) COMBINED TRANSPORT B/L : 물품의 수취지에서 지정인도지까지 두 개 이상의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에 의한 복합 운송(Combined Transport : Multimodal Transport)에 대하여 복합운송인이 수취증으로서 발행한 선하증권


라. 세관 제출자료

- ① 생산자 명부, 재배·수확일지, GAP 인증서, 생산공정도, 거래단계별 입출고 내역,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증명서 등
- ② 경유국에서 컨테이너 하역·재선적·상품 보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B/L, 선사가 발행한 비조작증명서 등

마. 검증 결과

한국 관세당국에서 팽이버섯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였으며, 한-아세안 FTA 운송원칙도 충족하였다고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회신함.

※ 동 사례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사업 진행 도중 실제로 원산지 검증이 실시되어,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사업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여 성공한 사례임.

**Key Point**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제3국을 경유하여 수출되는 경우 FTA 협정에서 제3국 경유 조건을 두고 있으며, 이는 FTA 협정별로 상이함.
그러므로, 각각의 FTA 협정별로 규정된 운송원칙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여러 변수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세청 안내사항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제3국 경유시 운송원칙과 관련 내용은 '기본편'의 '8.운송원칙 확인' 부분 참조.

Ⅲ. 원산지관리시스템 (FTA Agri)의 활용

1 FTA Agri 개요

■ FTA Agri 소개

“FTA Agri”는 국내 유일의 농산물 FTA 원산지 관리에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FTA 활용률이 낮은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분야 편리한 FTA 활용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원산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수출 농식품이 FTA 활용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생산자 조직·단체³⁵⁾에 적용 중)

“FTA Agri”는 생산자 조직·단체의 원산지관리 담당자가 신선농산물 및 일부 가공식품(예 : 유자차, 인삼)의 원산지 확인과정에서 드러난 실무적 한계점을 보완하고 업무적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관리대상 자료를 명확히 하여 신선농산물 등에 대해 적용되는 “안전생산기준”의 체계적인 입증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웹서비스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생산자관리부터 원산지확인서 발급까지 안전생산품에 특화된 원산지관리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관리·대상물품

최종적으로 FTA 협정국으로 수출되며, 우리나라에서 재배, 수확, 채취, 채집된 농산물과 식물성 제품·상품·생산품(이하 “농산물 등”이라고 함)

35) 생산자 조직·단체 : 복수의 생산자(농가)를 조합원 또는 구성원으로 관리하여 해당 생산품을 생산자와 직접 정
기적으로 거래(위탁수매, 계약재배 포함)하는 조직 및 단체(예 :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시스템 사용자

생산자 조직 및 단체에 소속된 원산지관리 담당 직원 · 관리자

■ 시스템 활용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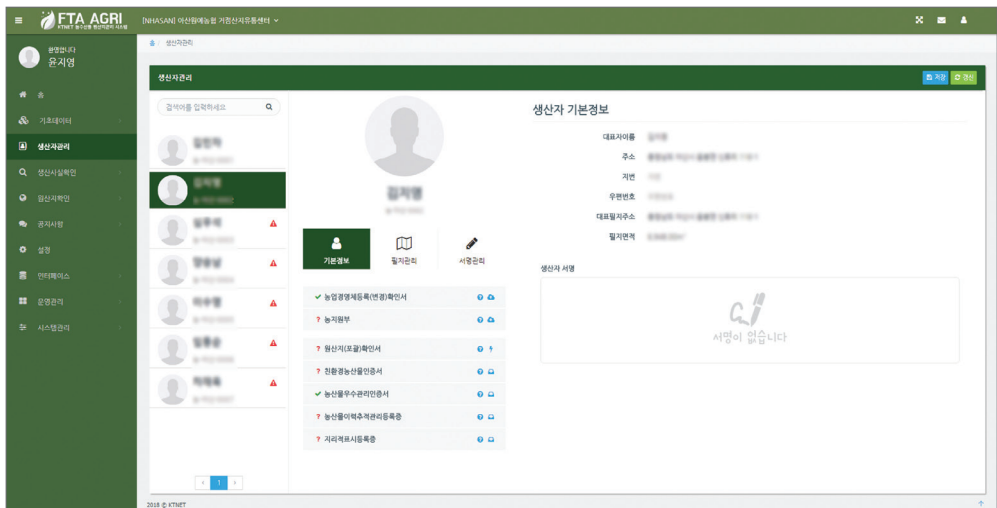
- 1) 농산물 등의 FTA 원산지관리 표준화
- 2) 관리대상 서류와 관리절차의 체계화
- 3) 원산지증빙자료 보관 · 관리의 연속성 보장
- 4) 원산지 증빙자료 생성의 적시성(timeliness)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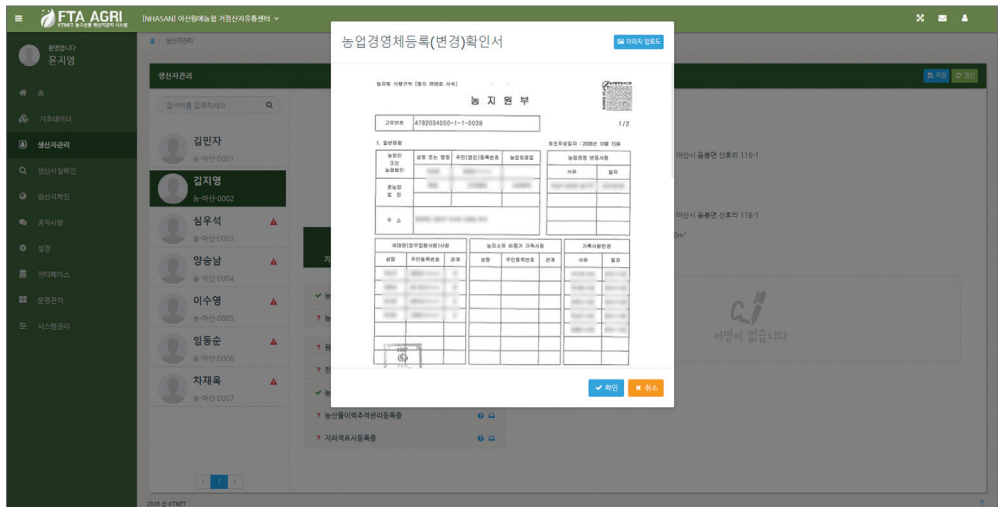
2 FTA Agri 주요기능

1. 생산자 관리

‘신선농산물’에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농장정보, 생산 능력 확인자료 등의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선농산물 (=완전생산품)’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기관(대한상공회의소,관세청)을 통해 발급코자 할 때는 ‘생산자명부’와 더불어 ‘농지원부’와 같은 실제 생산자 여부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FAT Agri의 ‘생산자 관리’ 메뉴에서는 생산자명부 등록 및 이력관리,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관리 기능 등을 활용하여 실제 생산자 여부와 생산 농장현황 정보를 확인·출력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생산자명(코드), 주소, 대표자, 연락처 등의 생산자 기본정보와 농장 소재지, 생산품목(코드), 서명관리 등의 개별정보를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사전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개인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 생산자 조직·단체의 원산지관리담당자가 수집·보관하게 됩니다.

2. 생산사실 확인자료 관리

완전생산 입증의 핵심은 어떠한 형태로든 재배, 수확, 채취, 채집을 실제 이행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예컨대, 이러한 증빙은 재배일지, 생산일지, 영농일지로 가능합니다. 다만, 재배일지 등의 작성양식, 방법 등이 생산자 조직·단체별로 매우 상이하고 농가별로 매일 기록하기 쉽지 않아 실제 재배·수확 이행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FTA Agri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실무에서 사용하는 '입고/검수증'에 생산자가 증명하는 '재배·수확일자'를 작성토록 하여 생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표준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수출자와 생산자(농가)가 상이한 유통과정에서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제품의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을 작성·등록할 수 있는 메뉴를 이용하여 실제 생산사실 확인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및 원산지조사 대응 시에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원산지 확인서 등 수취관리

생산자 조직·단체의 원산지관리담당자는 입고된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류를 생산자(조합원 농가)로부터 반드시 수취하여야 합니다. 원산지확인서류로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아래 표)가 있습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농산물 부문)

서류명	발급근거
①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②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③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
④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The screenshot displays the '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form within the FTA AGRI system. The interface includes a sidebar with navigation options like '원산지 관리', '공제사실', and '발행'. The main content area shows the form details:

- 1. 발급번호(Reference No.):** DCI101-040001
- 2. 공급하는 자 (Supplier):** Includes fields for Name,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 3. 공급받는 자 (Supplied to):** Includes fields for Name,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 공급품명 명세서(Goods Statements):** A table with columns for Item No., Description, and Quantity.

번호	원산지	연도	품목명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52	한·미 자유 무역 협정	2018.01.01	농산물	WO	[1]	[1]	KR	2018.01.01	2018.01.01
53	한·미 자유 무역 협정	2018.01.01	농산물	WO	[1]	[1]	KR	2018.01.01	2018.01.01
54	한·미 자유 무역 협정	2018.01.01	농산물	WO	[1]	[1]	KR	2018.01.01	2018.01.01
55	한·미 자유 무역 협정	2018.01.01	농산물	WO	[1]	[1]	KR	2018.01.01	2018.01.01
56	한·미 자유 무역 협정	2018.01.01	농산물	WO	[1]	[1]	KR	2018.01.01	2018.01.01
57	한·미 자유 무역 협정	2018.01.01	농산물	WO	[1]	[1]	KR	2018.01.01	2018.01.01
58	한·미 자유 무역 협정	2018.01.01	농산물	WO	[1]	[1]	KR	2018.01.01	2018.01.01
59	한·미 자유 무역 협정	2018.01.01	농산물	WO	[1]	[1]	KR	2018.01.01	2018.01.01
60	한·미 자유 무역 협정	2018.01.01	농산물	WO	[1]	[1]	KR	2018.01.01	2018.01.01
61	한·미 자유 무역 협정	2018.01.01	농산물	WO	[1]	[1]	KR	2018.01.01	2018.01.01
62	한·미 자유 무역 협정	2018.01.01	농산물	WO	[1]	[1]	KR	2018.01.01	2018.01.01
63	한·미 자유 무역 협정	2018.01.01	농산물	WO	[1]	[1]	KR	2018.01.01	2018.01.01
64	한·미 자유 무역 협정	2018.01.01	농산물	WO	[1]	[1]	KR	2018.01.01	2018.01.01

가시용적률등의 이행을 위한 관세입의 목적의 일한 법률 시행규칙(제2호)에 따라 유역 길이 표시를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origin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of Enforcement Rules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작성 일자(Date): 2018.01.01
작성 위치(Location):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작성 회사(Company Name/Address): 농산물수출관리협회
작성 일자(Date): 2018.01.01

FTA Agri에서는 해당 거래년도(또는 거래기간)에 확정된 생산자 명부를 통해 자동작성 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생산자에 제공하고 바로 서명하여 생산자 조직·단체에 제출토록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스템 담당자는 이러한 간편 기능을 통해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라는 번거로운 업무를 매우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displays the FTA Agri portal interface. On the left is a navigation menu with options like '원산지관리', '생산지관리', and '인증관리'.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농산물수출관리인증서' and shows a list of certificates. A specific certificate is highlighted with details: '인증번호' 1007199 and '유효기간' 2016-11-03 ~ 2018-11-02. Below this, there are sections for '농산물수출관리인증서' and '농산물수출관리인증서' with various status indicators and icons.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1. 인증번호 * 1007199 2. 유효기간 * 2016-11-03 ~ 2019-11-02

3. 생산자 정보

생산자코드	이름	발급주소	발급금액	AS코드	출처명
농-유안-0001			1,964.00m ³	1.16.02.01.21	해
농-유안-0001			5,706.00m ³	1.16.02.01.21	해
농-유안-0002			2,413.00m ³	1.16.02.01.21	해
농-유안-0002			1,202.00m ³	1.16.02.01.21	해
농-유안-0002			2,088.00m ³	1.16.02.01.21	해
농-유안-0002			1,250.00m ³	1.16.02.01.21	해
농-유안-0003			1,382.00m ³	1.16.02.01.21	해
농-유안-0003			1,544.00m ³	1.16.02.01.21	해
농-유안-0004			4,006.00m ³	1.16.02.01.21	해
농-유안-0004			3,914.00m ³	1.16.02.01.21	해
농-유안-0004			508.00m ³	1.16.02.01.21	해
농-유안-0005			2,856.00m ³	1.16.02.01.21	해
농-유안-0006			1,378.00m ³	1.16.02.01.21	해
농-유안-0006			192.00m ³	1.16.02.01.21	해
농-유안-0006			497.00m ³	1.16.02.01.21	해
농-유안-0006			6,454.00m ³	1.16.02.01.21	해
농-유안-0006			6,076.00m ³	1.16.02.01.21	해
농-유안-0006			2,300.00m ³	1.16.02.01.21	해
농-유안-0007			6,194.00m ³	1.16.02.01.21	해
농-유안-0007			2,380.00m ³	1.16.02.01.21	해

또한 생산자가 보유한 '원산지(포괄)확인서 인정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서류 상의 인증 취득자, 인증유효기간, 발급일자, 대상농가정보, 대상품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조직·단체가 생산자(조합원 농가)를 포괄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 인정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에 같음하여 수출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원산지 판정 및 서류발급 관리

상기 FTA Agri 원산지관리시스템 주요기능을 통해 관리된 완전생산 입증정보를 근거로 사용자는 다음의 단계를 거쳐 공급·수출되는 우리 제품(상품)의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적절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FTA Agri를 활용하면, 1단계(수출품목의 HS CODE 확인)에서 3단계(기초자료 준비)까지는 생산자 명부 등의 완전생산 입증정보를 토대로 자동 작성되며 사용자는 원산지를 판정하고자 하는 대상품목/대상매출을 확인하여 4단계(원산지 판정)부터 수행하면 됩니다.

FTA Agri를 활용하는 사용자라면 우리가 생산·공급·수출하는 완전생산품과 관련된 원산지조사(사후검증)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FTA Agri 활용문의

- 서비스 홈페이지 : www.ftaagri.or.kr 또는 ftaagri.utradehub.or.kr
- 문의처 : (주)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전자무역실 FTA Agri 담당자(02-6000-2025/2036)

